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2023년도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매뉴얼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이 매뉴얼은 「**산업지원 병역일터**(<http://work.mma.go.kr>)」
사이트 교육방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일러두기 ●

“용어해설”란은 본 매뉴얼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해 맥락적으로 설명한 것으로서 법적 정의나 사전적 해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행정처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1. 제도 개요	4
2.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선정취소	6
3.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9
4.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11
5. 복무 방법(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 해당분야)	14
6. 전문연구요원의 전직	18
7. 국내 파견(출장) 및 국외여행	21
8. 신규 편입자 및 복무관리 담당자 교육	26
9. 군사교육소집	28
10. 휴가, 병가 등	30
11. 편입취소	32
12. 복무만료	35
13. 신상변동통보 및 서류 관리	37
14. 실태조사 및 평가	40
15. 벌칙 및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	45
16. 전문연구요원 권익보호	50
17. 부록	
▶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54
▶ 서식	59



전문연구요원 제도란?

- ▶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과학기술과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에서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보충역 복무 제도입니다.
- ▶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한국 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의 자연계 박사 학위과정을 포함하며, 이하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이라 한다)을 수료 후 당해 대학원의 연구실에서 학문 및 과학기술 연구분야에서 36개월 복무
※ 단, 2013년 이전에 편입(수학 중에 전문연구요원 신분으로 편입)된 사람은 수료 후 의무복무 개시일로부터 36개월 복무



관련법령

- ▶ 병역법 [법률 제18682호(시행 '22. 7. 5.)]
- ▶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934호(시행 '22. 10. 4.)]
- ▶ 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1088호(시행 '22. 7. 5.)]
-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병무청 훈령 제1882호(시행 '22. 5. 31.)]



관련 용어의 정의

- ▶ “징집”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
- ▶ “소집”은 국가가 병역의무자중 예비역·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등에게 현역복무 외의 군복무의무 또는 공익분야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
- ▶ “전문연구요원”은 학문과 기술연구를 위하여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업무에 복무하는 사람
- ▶ “병역지정업체”라 함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기간 산업체·방위산업체 등을 말함
- ▶ “연구전담요원”은 연구소(연구전담부서) 또는 영리법인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사람

- ▶ “연구시설”은 다른 부서 또는 건물과 구별되는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실험실 및 연구기자재를 말함
- ▶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이란 사방이 다른 부서와 차단되고 별도 출입구가 있는 폐쇄된 연구공간을, “연구기자재”란 연구소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기술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를 말함
- ▶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 지식 축적 및 새로운 응용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말하며,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등 기업화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함
- ▶ “해당분야”란 병역지정업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분야가 대학(원)의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해당 전문연구분야를 말함
- ▶ “자연계 학사”란 대학에서 자연계대학원 계열의 학과 또는 이에 준한 학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학사학위
- ▶ “당연전직”은 법 제3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는 것(법 제39조제3항제1호의 사유는 영 제85조제1항의 각호의 경우를 말함)
- ▶ “승인전직”은 영 제85조제3항 각호의 사유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병역 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는 것
- ▶ “교육훈련”이란 교육훈련(연수)기관에서 연구업무 또는 제조·생산과 관련되는 교육훈련(정신교육 포함)을 말함
- ▶ “지방병무청”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을 말하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지)청장을 말함
- ▶ “병가”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휴직 및 결근을 말함
- ▶ “무단결근”이란 전문연구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에 따라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경우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 40시간 미만을 복무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미달 복무 시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경우를 말함
- ▶ “국내 파견근무”란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 소속으로 공동연구계약서, 기술협력협약서 및 기술도입계약서 등에 따라 파견된 업체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는 것
- ▶ “국내 출장근무”란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 소속으로 해당업체에서 개발·제조 및 생산한 제품의 설치·시험가동 및 기술지도 등을 위해 다른 업체나 장소에서 업무수행 하는 것
-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 ▶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함

2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선정취소

2-1.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은 이렇게 합니다.

- ▶ 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매년 6월말(중소기업 연구기관은 1월말, 6월말) 선정 추천권자가 신청을 받아 연구인력 규모 등을 평가하여 병무청장에게 추천하면 병무청장은 우수업체 위주로 실태조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 ▶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추천기관의 평가등급이 낮은 경우 선정이 제외될 수 있으며,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업체도 다시 선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및 추천권자

분야별		추천권자	추천기준	접수처
박사과정	자연계대학원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해 지정된 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업등부설연구소	기업부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은 2인)이상 확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대학부설	교육부장관	학칙에 규정되어 있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연계 대학부설 연구기관	한국연구재단
국공립등	특정연구(과기원 제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해 지정된 연구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국공립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연구기관
	공익법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부설연구기관
	의료연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정부출연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초연구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역혁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산업	국방과학연구소장	「방위사업법」에 의해 위촉된 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 선정절차는 이렇습니다.

- ▶ 신규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원하는 자연계대학원의 장은 당해연도 6월말까지 한국연구재단에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추천권자인 교육부장관이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추천
- ▶ 병무청장은 추천권자의 의견, 선정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제외할 수 있음
- ▶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요청은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시 함께 요청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대학원별 필요 요청 인원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 추천



병역지정업체 선정제외 대상

- ▶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복무관리 부실사유 등으로 별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기관
- ▶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기관. 다만, 업체의 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 ▶ 연구기관 선정추천권자의 자체 평가기준에 따른 추천등급이 낮은 연구기관
- ▶ 근로자가 사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연구기관
- ▶ 연구요원이 사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연구기관
- ▶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라 공개한 고액·상습체납 업체의 연구기관
- ▶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연구기관 중 선정취소 전 인원배정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기관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별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기관

✓ 용어해설

- **병역지정업체 선정** :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을 선발하여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확정되는 것
- **추천권자** :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인원배정을 위하여 업체로부터 관련 서류를 접수(보통 산하기관에 위임)하고 평가점수 및 등급을 매겨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는 업종별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장을 말함

2-2. 병역지정업체는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병역지정업체가 연구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없으며, 이를 취소하지 아니할 경우 전문연구요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합니다.
- ▶ 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 및 병역지정업체 추천권자에게 신상변동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선정취소 사유

- ▶ 병역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원배정을 받지 못하였거나 채용하지 아니하여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 병역지정업체가 선정기준(영 제72조)에 미달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 병역지정업체장이 병역지정업체를 계속 운영하기 곤란하여 선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선정취소 절차

- ▶ 사전통지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원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않아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업체」 등 「병역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규정에 의한 선정취소 대상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당해 업체장에게 선정취소 대상 업체임을 사전 통지합니다.(붙임 제1호 서식)
- ▶ 병역지정업체장의 의견제출 : 병역지정업체장은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 제출서(붙임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업체의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선정취소 대상으로 확정된 업체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합니다.
- ▶ 병무청장은 선정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 및 해당업체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3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3-1. 인원배정 절차와 기준은 이렇습니다.

- ▶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 포함)의 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의 다음해 필요인원을 추천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자연계대학원은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접수
- ▶ 병무청장은 추천권자 평가등급과 복무관리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인원배정 합니다.



인원배정 절차



* 인원배정 추천권자 및 추천 평가기준은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동일

* 대학원은 석사과정 졸업예정자 및 박사과정 수학중인 자를 대상으로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필요인원을 사전 조사하여 소요인원 산출(교육부 자체 선발 전형에 의해 선별하지만 배정 규모 산정을 위해 필히 6월말까지 필요인원 신청 해야함)



인원배정 기준

- ▶ 복무관리 평가결과 차등 배정
※ 복무관리 평가 불합격 대학원은 당해연도 배정인원의 5~10%를 다음해 배정인원에서 제외
- ▶ 이공계와 의학계를 구분하여 소요인원 신청 범위 내에서 교육부에 총괄배정
-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생은 박사과정에 수학중인 국비장학생 등 선발인원 범위에서 배정할 수 있음
- ▶ 보충역은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연계대학원의 필요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인원배정 규모

- ▶ 현역 600명(과학기술원은 별도), 보충역은 자연계대학원 소요대로 편입(교육부 선발)

✓ 용어해설

-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 경북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 포함)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하여 복무할 예정으로 박사학위과정(석·박사 통합과정은 석사학위과정 수업연한 이상을 마치고) 수학 중(수료 전)에 미리 선발된 사람

※ 교육부 선발시험 및 과학기술원의 자체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됨

- **인원배정** :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을 병역지정업체별로 배정하는 것(병역지정업체는 그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 가능). 자연계대학원(과기원 제외)에 대한 인원배정은 교육부에 총괄배정 하고 있음
- **총괄배정** :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는 한도를 총원으로 정하여 주고, 그 범위 내에서는 병역지정업체별 인원을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인원배정의 한 방법

※ 교육부는 총괄배정 받은 인원만큼 「자연계대학원 편입대상자」 선발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 선발전형 실시

3-2. 복무관리 부실 등의 병역지정업체는 인원배정이 제한됩니다.

- ▶ 병역지정업체가 복무관리 평가결과 불합격하거나 선정기준에 미달 되는 등의 경우 인원배정이 제한됩니다.



인원배정 제한 대상

- ▶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평가결과 60점 미만 업체 : 당해연도 배정인원의 5~10%를 다음해 배정 감축
- ▶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에 미달한 업체 : 1년간 배정제한

〈참고〉

- 복무관리 종합평가 결과 60점미만 시 인원배정 축소(5~10%)
- 복무부실 발생 시 **대학원장**(과기원장 포함) 과태료 부과 및 관련직원 신분상 조치요구
- '13년부터 전문연구요원 대기업 배정 중단('21.1.1.편입자부터 전직 불가능, '22년부터 보충역도 편입 불가능)

4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4-1.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자격과 절차는?

- ▶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는 경우 편입원서를 제출받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편입원서를 제출합니다.

편입대기자 선발 및 전문연구요원 편입

- ▶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 선발 : 선발전형 등을 거쳐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로 박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선발함
 - * 석·박사학위통합과정 재학자는 「고등교육법」 제31조에 의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상을 이수한 경우
 -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선발전형 없이 선발
 - ※ 자연계대학원 :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선발전형 실시
- ▶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로 미리 선발된 사람이 박사학위과정 수료 시에 편입함

편입자격

-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석·박사 학위 통합된 과정 포함)을 수료한 사람(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자)
-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의무복무기간을 37세까지 마칠 수 있는 자)

편입기준

- ▶ 국내대학원 수료자의 편입기준

연구분야	편입기준(대학원의 전공 및 학위)
자연계 연구기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자연계(전공)의 석사 또는 박사 (이학, 공학, 도시계획학, 조경학, 약학, 농학, 수산학 등)수의학, 보건학, 간호학 석사 또는 박사기초의학(의학, 치의학, 한의학 등)전공 석사 또는 박사디자인학 전공 석사 또는 박사 ※ 의상디자인, 공예디자인 등 예술관련분야는 편입제외이·공계열 학과의 이·공계 과목을 전공하고 취득한 교육학 석사 또는 박사미술학(산업·시각·제품·실내·포장디자인 전공) 석사 또는 박사심리학(인지심리학, 생물심리학 전공) 석사 또는 박사
자연계 대학원 과학기술원	자연계 연구기관의 편입대상 전공분야의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을 수료한 사람

✓ 용어해설

- 편입 : 병역의무 대상자 신분에서 전문연구요원(병역의무 이행 중) 신분으로 변경시키는 것

▶ 기초의학 전공이란?

의과대학원	치과대학원	한의과대학원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유전학, 병리학, 법의학, 약리학, 기생충학, 임상약리학, 미생물학, 면역학, 의공학, 의학공학, 예방의학, 산업의학, 사회의학, 의료관리학, 의사학, 의료정보학, 계량의학, 의학교육학 등	구강해부학, 구강조직학, 구강생리학, 구강생화학, 구강미생물학, 구강생물학, 구강병리학, 구강악안면생명과학, 구강악안면기능생물학, 구강악안면감염질환 및 면역학, 환경지역사회구강보건학, 치과약리학, 예방치(과)학, 치과(생체)재료학, 치과경영정보학, 치과생체모방재료과학, 정보기술과치과의료학, 인체생물학 등	한(방)약리학, 침구경락학, 동서신경과학, 서종양학, 의료공학, 임상영양학, 제3의학, 신약개발학, 한의정보학, 원전학, 의사학, 생리학, 병리학, 진단학, 본초학, 방제학, 경혈학, 해부학, 예방의학, 생화학 등



편입원서 출원

- ▶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로 수학 중에 선발된 사람이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는 날의 14일 전까지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면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 구비서류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붙임 제3호 서식)
 -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붙임 제4호 서식)
 - 박사학위과정 수료증명서
(편입원서 출원 시 수료증명서가 없는 경우 향후 수료일에 제출 가능)
- ▶ 처리결과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편입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편입처분을 한 후에 그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의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보

✓ 용어해설

- **편입원서** : 전문연구요원 복무를 신청하는 서류로서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붙임 제3호 서식)를 말함

4-2.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등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습니다.
- ▶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편입을 전제로 의무자 선발 시 병역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편입제한 대상

- ▶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이탈(1일 이상)한 사람(법 제68조)
- ▶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법 제68조)
-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법 제86조)
- ▶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한 사람(법 제87조)
- ▶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법 제87조)
- ▶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을 기피한 사람(법 제88조)
-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법 제94조)
- ▶ 의무사관후보생 중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해의 의무장교 수급계획에 따라 부족한 군 전공의 과목을 수련한 사람(훈령 제26조)
* 전문과목별 현역소요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방부에서 분류(국방부 보건정책과에서 부족 전문과목 제한)
- ▶ 연구요원의 대학원 재학 당시의 전공분야와 다른 연구분야에 복무하고자 하는 경우는 편입제한(훈령 제30조)
- ▶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중 편입이 취소된 사람(훈령 제31조)

✓ 용어해설

- **복무이탈** :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무단으로 근무지를 벗어남
- **기피** :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하지 않는 것

5 복무 방법(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 해당분야)

5-1. 전문연구요원은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 ▶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이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을 경우 병역지정업체는 과태료 처분 및 행정조치(고발, 경고, 주의, 시정), 관련 직원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 (장소 제한)

- ▶ 전문연구요원은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하여야 하므로, 편입당시에 지정된 연구실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전직·파견·출장·국외여행 등으로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승인·신상변동통보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장소제한 예외)
 - 연구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해당학과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의 연구 활동



편입당시 해당분야 (업무 제한)

- ▶ 편입당시 연구분야(대학원 전공분야)에 복무
※ 본인 전공과 관련된 연구조교 겸직 가능
- ▶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 대학연구기관(과학기술원 포함)의 장이 두뇌한국 21계획에 의한 사업단이나 다른 기업과 공동연구 또는 기술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 활동을 하는 경우

〈편입당시의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지 않은 위반사례〉

- ○○소재 대학원에 편입한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을 편입 당시 연구기관이 아닌 △△소재 대학원의 연구소에서 4개월 동안 근무시킨 경우
▶ 병역법 위반 : 대학원장 과태료처분 및 직원 신분상 조치요구, 의무자 4개월 연장복무

〈편입당시의 연구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위반사례〉

- 유학 경력이 있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외국어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연구분야가 아닌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과정에 6개월 동안 근무시킨 경우
▶ 병역법 위반 : 대학원장 과태료처분 및 직원 신분상 조치요구, 의무자 6개월 연장복무

5-2. 전문연구요원은 겸직이 금지됩니다.

- ▶ 전문연구요원은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거나 개인 영리활동, 교육기관에서 수학할 수 없습니다.

겸직이 불가능한 업무

- ▶ 민법·상법에 의한 기업의 이사·감사·상무·전무 등 임원의 겸직
- ▶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조교수 이상 교수)의 겸직
- ▶ 편입당시 연구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

겸직으로 보지 않는 업무

- ▶ 박사과정 수료자가 병역지정업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원 수업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을 준비하는 경우
- ▶ 연구업무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대학이나 학원의 강사로 복무시간 후에 출강하는 것 포함. 다만,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개인 영리활동 금지

- ▶ 근로시간 중에 개인 영리활동 금지
- ▶ 병역지정업체장은 전문연구요원이 연구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영리활동 등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 ▶ 대학연구기관 소속 연구요원은 개인자격으로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영리활동 불가(단, 소속 연구소장<지도교수 포함>이 공동연구협약 등에 따른 연구과제 부여 후 연구활동비 지급 가능)

〈영리활동을 겸직한 위반사례〉

-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이 조기 퇴근하여 입시학원에서 강사로 개인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8개월 동안 묵인한 경우
▶ 병역법 위반 : 대학원장 과태료처분 및 직원 신분상 조치요구, 의무자 편입취소

5-3.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 대학원장 또는 과학기술원장은 복무관리 담당자와 책임자를 임명하여 전문연구요원의 출·퇴근, 개인별 연구실적, 해당분야 복무여부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복무관리 담당자 임명

- ▶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복무관리 담당자를 임명하여 자체복무관리 체계 유지
※ 복무인원 규모와 연구 장소의 분산 등을 고려하여 1인의 복무관리 담당자로 복무관리가 어려운 경우 단과대학, 학과별로 복무관리 담당자를 추가로 지정하여야 함



복무관리 책임자 임명

- ▶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의 장은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해당분야 복무여부 관리 감독을 위해 개인별 지도교수(박사학위과정 연구요원의 4촌이내 혈족이 아닌 사람)를 복무관리 책임자로 임명



전문연구요원 근로시간

- ▶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기준



주 40시간 유연근무 가능

-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주 40시간 유연근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1일 복무시간은 최대 12시간 이내로 하되 출퇴근 관리 등 세부 운영사항은 자연계대학원 또는 과학기술원별로 수립하여야 함.
-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무단결근은 휴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주간 복무시간이 40시간에 미달된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미달 시간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 통보를 하여야 함
- ▶ 1일 근로시간 산정 시 중식 및 석식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식 시간은 11:00~13:00 사이의 1시간, 석식 시간은 18:00~20:00 사이의 1시간으로 한다.



개인별 연구실적 기록

- ▶ 대학연구기관의 장(과학기술원의 장 및 우수집단인 연구소장을 포함)은 소속 연구요원 개인별로 연구 프로젝트명, 연구기간 및 연구실적 등을 기록·유지



출 · 퇴근 관리

- ▶ 연구요원의 출·퇴근 관리는 전자식 출입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 다만, 복무인원 등 규모가 적어 전자식 출입관리시스템 관리의 실효성이 낮은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방식으로 운용 가능

5-4. 박사학위 취득 의무화(‘23.1.1. 편입자부터)

복무 중 박사학위 취득 의무화

- ▶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취득 후 전직하여 기업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제도 개선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부여(법제37조제4항)

-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 ▶ 유예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제40조제2호(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3호(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을 무단결근한 경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
 2.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편입취소

박사학위 취득을 못한 경우 편입이 취소(법제41조)

-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경우
-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한 경우
-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된 날부터 2년(유예기간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편입이 취소됩니다.

* 학위 취득 전 병역법시행령 제85조제항항제2호의 승인 전직은 불가(병역법시행령 개정 진행중)

박사학위 취득 후 옮겨 복무(법제39조제3항제2호)

-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법 제39조제3항에따라 다른 병역지정 업체로 전직을 가야 합니다.
- ▶ 이 경우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란 다음 각 호의 병역지정업체는 제외한다.
- ▶ 영 제72조제1항제3호의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 과학기술원의 자연계 박사학위과정과
- ▶ 영 제72조제1항제5호의 자연계대학원
- ▶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업 연구기관

6 전문연구요원의 전직

6-1. 전직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전문연구요원은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되는 등 부득이하게 해당분야에 복무할 수 없게 되거나
- ▶ 본인의 원에 의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고 다른 업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입당시 해당분야와 동일한 분야로 옮겨야 합니다.



당연전직 대상

-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사람이 당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 ▶ 복무중인 대학원이 폐교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 ▶ 복무중인 대학원의 휴교 등으로 6개월 이상 연구업무에 복무할 수 없는 경우



승인전직 대상

- ▶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병역지정업체인 기업부설 연구소 등)에 복무를 원하는 경우(22년 편입자부터는 제한)
- ▶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

✓ 용어해설

- **당연전직** : 반드시 다른 회사로 옮겨 복무해야 함. 병역지정업체 사정으로 해당 업체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을 경우가 해당됨
- **승인전직** : 본인의 원에 의해 다른 회사로 옮김.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전 업체에서 퇴사하고 다른 업체에서 근무 가능

- ▶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하거나 유예기간 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편입이 취소됨



전직제한

- ▶ 승인전직 대상자로 잔여 의무복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의 전직(다만, 전직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결정된 경우에는 제외)

- ▶ 그 해 고발·경고·주의 처분을 받았거나 인원배정이 제한된 병역지정업체(방위산업 연구 기관은 제외)로의 전직
 - ▶ 당해 전문연구요원이 전직하는 경우 핵심 연구 과제가 중단되는 때
 - ▶ 당해 전문연구요원이 동일분야의 다른 연구소로 전직할 경우 연구 중인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때
 - ▶ 병역지정업체장이 4촌 이내 혈족인 해당업체로의 전직(대표이사 기준 4촌 이내)
 - ▶ 편입당시 연구계열(자연계, 인문사회계)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
 - ▶ 대기업 부설연구기관으로의 전직
- ※ '21.1.1. 편입자부터 적용'

6-2. 전직하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 ▶ 전문연구요원으로부터 전직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장은 전직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연구요원은 전직승인이 결정된 후에 퇴교하여야 합니다.



승인신청서 제출

- ▶ 전직희망자 :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전직승인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붙임 제3호서식)
 - 옮겨 복무할 병역지정업체장이 1개월 이내 발행한 채용동의서(붙임 제6호서식)
 - 전직사유 관련 증빙서류(관련 해당자에 한함)
- ▶ 병역지정업체의 장
 - 전직에 대하여 의견을 기재하여 복무기록표 사본 등을 첨부, 14일(병역법시행령 제85조 제3항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7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별도 의견 제출하지 않고 전직신청서상의 업체장 직인 날인으로 전직동의 갈음)
 - ※ 전직에 대한 의견 기재 시 부동의 할 경우 붙임 제26호 서식 전직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 여부 결정시에 업체장의 동의 여부가 전직승인의 전제조건은 아님
 - ※ 전문연구요원이 병역법시행령 제8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 하려는 경우에는 전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병역지정업체장이 전직승인신청서를 접수하고도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① 전문연구요원이 직접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② 이 경우 병역지정업체장의 의견을 별도로 제출 받아 처리
 - ③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지정된 기간 내 의견 미제출 전직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결정

- 병역지정업체장의 의견과 전직 희망자의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제도의 목적, 이해 당사자간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함.
-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병역지정업체장에게 통보하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함.



전직 승인자의 관리

▶ 병역지정업체장은 의무자가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할 경우에는 복무기록표와 복무 상황부 등을 전직할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 새로이 옮겨 갈 병역지정업체가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복무기록표와 개인별복무상황부 등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30호 서식 전직대기자 관리 명부를 작성하고 구직활동 여부를 관리하여야 함

▶ 전직승인을 얻은 사람이 원래 병역지정업체에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 병무청장에게 전직승인 취소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실상 복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전직 대기기간

▶ 전직 대기기간 :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전직의 경우에는 전직사유 발생일, 승인전직의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14일(채용동의서가 필요한 기업체 등으로의 승인전직은 14일, 그 외는 3개월)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여야 함. 이 경우 전직 대기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함.

다만,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 법 제39조제3항 제2호 또는 이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에는 대기기간 전부 의무복무기간에 미산입.(영 제89조2항7호)

▶ 전직 대기기간 연장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3개월 범위 안에서 전직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만, 연장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당연전직 대상자가 3개월이 지나도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하지 못한 경우
- 병역법시행령 제85조제3항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 규정 이외 사유의 승인전직 대상자 3개월이 지나도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하지 못한 경우
- 기타 부득이하게 전직 대기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승인전직에 관한 위반사례〉

-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이 관할지방병무청에 전직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병역지정업체 (연구기관)에 옮겨 복무 ► **병역법 위반 : 편입취소**

✓ 용어해설

- **전직 대기기간** : 전직 사유 발생일 또는 승인일로부터 다른 업체로 옮겨서 복무하기 전까지를 말함

7

국내 파견(출장) 및 국외여행

7-1. 국내 파견(출장)을 갈 수 있습니다

- ▶ 전문연구요원은 해당분야 복무와 관련하여 출장·파견근무 할 수 있으며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출장·파견근무를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신상변동통보)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 파견(출장)의 정의

- ▶ “국내 파견근무”라 함은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소속으로 공동연구계약서, 기술협력 협약서 및 기술도입계약서 등에 따라 파견된 업체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 ▶ “국내 출장근무”라 함은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소속으로 해당업체에서 연구개발한 분야에 대한 시험가동·시제품의 생산 또는 기술지도 등 관련업무수행을 위하여 다른 업체나 장소에서 업무수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 파견(출장)의 기간

- ▶ 파견(출장) : 의무복무기간중 통틀어 2년
- ▶ 교육훈련 : 의무복무기간중 통틀어 6개월



국내 파견(출장)의 범위와 제한

- ▶ 파견의 범위
 -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동일 법인내 병역지정업체간의 파견
 - 공동연구를 위한 병역지정업체 간 또는 동일 법인이나 다른 법인의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연구소로의 파견
 -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업무특성상 부득이하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가 없어 실험장 또는 사업장 등에서 연구
- ※ 전문연구요원이 파견근무 중인 비병역지정업체도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비병역지정업체로 파견근무 시키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비병역지정업체장에게 실태조사에 협조하도록 요청
- ▶ 파견의 제한
 -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의 해당업체로의 파견
 -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인원배정이 제한된 병역지정업체로의 파견
 - 파견 받는 업체의 근무 장소에 파견자 1인만 근무하는 파견

- 파견 받은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의 파견

▶ 출장의 범위

-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병역지정업체간 출장
- 연구분야와 관련한 국내회의 또는 세미나 참석
- 전문연구요원이 연구 개발한 분야에 대한 시험가동·시제품의 생산 또는 기술지도 등

▶ 출장의 제한

-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와 관련 없는 영업소 또는 협력업체 등에 수금 출장
- 각종 전시회의장 등에서 영업활동 등의 판촉사원 근무



국내 파견(출장) 승인

- ▶ 복무기록표 기재·정리 : 7일 이내의 교육훈련 및 파견(출장)
- ▶ 신상변동통보 : 8일 이상~3개월 미만의 교육훈련 및 파견(출장), 병역지정업체간 파견
 - 파견기간 동안 발생한 파견자의 신상변동사항은 당초 병역지정업체에서 관할 지방 병무청 통보
- ▶ 승인신청 :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파견(출장)
 - ※ 지방병무청 승인 후 파견 가능
 - 파견 시 '파견자 성실 복무관리 서약서'(붙임 제10호 서식) 관할 지방병무청 제출
- ▶ 파견자 복무관리 : 파견자 개인별 복무상황부를 파견업체로 송부 작성관리하게 하고 격주 단위로 업무수행내역서, 개인별 복무상황부, 출근부 제출받아 성실복무여부 확인 점검

〈업무처리 사례〉

(사례1) 전문연구요원이 출장(월~수), 사내 근무(목), 출장(금~목) 형태로 2주간에 걸쳐 출장을 간 경우

- ▶ 일수계산 : ① 사내 근무(목)으로 인해 연속하지 않은 출장임.
 - ② 훈령 제32조 제10항에 따라 사내 근무 이전 출장(월~수)은 출장일수 합산 3일, 사내 근무 다음날부터의 출장(금~목)은 출장일수 합산5일(토·일요일 미포함 일수만 합산)
- ▶ 복무기록표 기재(출장을 2회(3일 출장, 5일 출장) 간 경우로서 복무기록표에 출장 2회 기재)
- ▶ 위반시 행정조치 : '시정'(6-가)

(사례2) 전문연구요원이 화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출장을 간 경우

- ▶ 일수계산 : 훈령 제32조 제10항에 따라 첫주 출장일수 합산(4일), 다음주 출장일수 합산 (2일)하여 6일(토·일요일 미포함 일수만 합산)
- ▶ 복무기록표 기재(토·일요일 포함하지 않고 6일간 출장임, 복무기록표에 출장 1회 기재)
- ▶ 위반시 행정조치 : '시정'(6-가)

(사례3) 전문연구요원이 월요일부터 다음주 금요일까지 출장을 간 경우

- ▶ 일수계산 : 훈령 제32조 제10항에 따라 첫주 출장일수 합산(5일), 다음주 출장일수 합산(5일)하여 10일(토·일요일 미포함 일수만 합산)
- ▶ 신상변동통보(10일간 출장이므로 신상변동통보 대상)
- ▶ 위반시 행정조치 : ‘시정’(1-다)

(사례4) 전문연구요원이 월~금 출장 후, 그 다음주 월요일 오전에는 사내로 출근했다가 다시 오후에서부터 그 다음주 금요일까지 출장을 가는 경우

- ▶ 일수계산 : ① 둘째 주 월요일도 출장에 해당함.
② 훈령 제32조 제10항에 따라 첫주 출장일수 합산(5일), 다음주 출장일수 합산(5일), 그 다음주 출장일수 합산(5일)하여 15일(토·일요일 미포함 일수만 합산)
- ▶ 신상변동통보(15일간 출장 간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상변동통보 대상)
- ▶ 위반시 행정조치 : ‘주의’(1-다)

(사례5-1) 전문연구요원이 22년 10월2일부터 12월15일까지 출장을 간 경우

- ▶ 일수계산 : ① 훈령 제32조 제9항에 따라 10월2일부터 12월1일까지 2월
② 훈령 제32조 제10항에 따라 12월2일부터 12월15일까지 10일
(토·일요일 미포함 일수만 합산)
- ▶ 신상변동통보(2월10일(①+②)간 출장 간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상변동통보 대상)
- ▶ 위반시 행정조치 : ‘경고’(1-다)

(사례5-2) 전문연구요원이 22년 12월2일부터 12월23일까지 출장을 간 경우

- ▶ 일수계산 : ① 훈령 제32조 제10항에 따라 12월2일부터 12월23일까지 16일
- ▶ 신상변동통보(토·일요일 포함하지 않고 16일간 출장이므로 신상변동통보 대상)
- ▶ 위반시 행정조치 : ‘주의’(1-다)

〈파견기간 위반사례〉

(사례6-1) ○○소재 대학원에 편입한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을 △△소재의 타 대학원에 파견승인 없이 10개월 동안 근무시킨 경우

- ▶ 병역법 위반 : 대학원장 과태료처분 및 직원 신분상 조치요구, 의무자 10개월 연장복무

(사례6-2) 병역지정업체장이 전문연구요원을 다른 연구소에 파견승인을 받아 근무시키면서 파견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로 복귀시키지 않고 파견기간 종료 후 10개월 동안 계속 근무시킴

- ▶ 병역법 위반 : 대학원장 과태료처분 및 직원 신분상 조치요구, 의무자 10개월 연장복무

✓ 용어해설

- **통틀어** : 있는 대로 모든 것을 합하여 → 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중에 발생한 기간 전부를 합하는 것
- **신상변동** : 병역지정업체와 관련된 사항이 변동되거나 또는 전문연구요원 의무복무기간 중에 개인 신상에 변동이 발생한 사항을 말함. 예) 휴업, 파견(출장), 결근 등

7-2. 국외여행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병역지정업체장의 추천을 받은 전문연구요원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고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 국외여행을 할 수 있음



국외여행 허가

-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1년 범위 내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기간은 해당분야에서 복무한 것으로 인정
- ▶ 단, 다음의 병무청장이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 허가를 얻은 경우 그 기간(통틀어 1년) 모두를 해당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인정

[병무청장이 정한 국외여행허가 사유]

목적	세부 내용	구비서류
공동연구	국외 외국기업 또는 외국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계약, 공동연구협약 또는 기술협력 협약에 의한 공동연구	공동연구계약서, 공동연구협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중 해당서류 사본 1부
기술연수	국외 외국기업 또는 외국기관과의 기술도입계약 또는 기술협력 협약에 의한 국외기술연수 연구장비의 도입에 따른 기술연수	기술도입계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중 해당서류 사본 1부(단, 연구장비의 도입계약서에 기술연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계약서 사본)
기술지도	국외에서 소속국내 병역지정업체의 제품·기술을 수입하거나 기술협력관계에 있는 OEM 생산관계에 있는 외국기업(기관)에 대한 기술지도	기술지도를 받을 외국기업이나 외국기관과 체결한 기술수출계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사본 1부(단, 제품수출계약서에 기술지도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계약서 사본)

- ▶ 공동연구계약(협약) 등으로 3개월 이상의 국외여행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 국외여행허가 신청시 유의사항〉

- 여행목적 :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사유에 부합
- 병역사항 : 35세(군 전공의수련과정 이수자로서 자연계대학원 박사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37세)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을 것
- 해당분야 : 연구·연수·지도 내용이 전문연구요원의 해당(전공)분야와 관련성
- 경비부담 : 공동연구의 경우는 병역지정업체와 국외연구기관 공동부담 원칙
※ 전문연구요원 개인부담은 개인 연구목적으로 보아 복무기간 불인정
- 연구성과물 소유권 : 공동연구의 경우 국가기관 또는 병역지정업체와 해외 공동연구기관의 공동소유 원칙
※ 전문연구요원 개인 소유는 복무기간 불인정
- 공동 연구기간 및 계약(협약) 유효기간 확인
- 협약 체결당사자 : 병역지정업체장과 외국기업 또는 외국연구기관의 장
※ 전문연구요원과 교수 등 개인간 계약체결은 개인연수로 보아 복무기간 불인정

- ▶ 전문연구요원이 업무출장 등의 사유로 국외여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여비지급 내역서, 허가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수출·입 계약서 등 증빙서를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개인 사유 단기여행 제외),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 전문연구요원의 국외체재 복무 관리를 위하여 현지 책임관을 정·부제로 복수 지정·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지 책임관을 단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 전문연구요원은 공동연구·기술연수 등으로 3개월 이상 국외출장시는 「국외체재 중 업무수행 상황부」(붙임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현지 책임관이 확인한 업무수행내역과 일일근무 상황을 2주마다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비치·관리하고 사본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외체재 중에는 체재국의 관련 법령에 따른 휴일을 적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국외체재 중 업무수행 상황부」 작성·관리가 부실한 경우 평가 시 감점
- ▶ 국외여행허가기간 준수 철저
 - 전문연구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내 미귀국시 편입취소 대상
 - 반드시 국외여행허가 기간 내 귀국 조치
 - 국외여행허가 추천서의 여행목적을 휴가범위 내 개인비용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단기 여행으로, 해당분야 복무 관련 여행(업체 단체연수 포함)인 경우에는 출장명령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업무출장으로 작성
 - 여행목적은 개인여행, 업무출장,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선박승무원 탑승, 국외취업 중 선택

8 신규 편입자 및 복무관리 담당자 교육

8-1. 신규 편입자는 복무규정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 관할 지방병무청에서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복무규정, 관련법령 위반시의 행정처분 내용, 위반행위신고제도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대상/시기

- ▶ 대상 : 전문연구요원 신규 편입자
- ▶ 시기 : 가급적 편입 후 2개월 이내에 실시
※ 신규 편입자 교육에 불참한 경우 병역지정업체 평가 시 감점 처리

교육 통보

- ▶ 교육일시와 장소는 교육일 7일 전까지 병역지정업체의장을 거쳐 교육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단, 편입결과 통보 시 교육일시와 장소를 함께 통보 가능)
- ▶ 질병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곤란한 경우 교육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교육 연기자나 불참자는 다음 교육일시에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내용

- ▶ 복무규정, 관련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내용
- ▶ 위반행위 신고제도 등
 - (병역법)위반행위신고 제도 : 위반행위 신고방법, 신고자 보호, 포상금 지급기준 등
- ▶ 산업지원 병역일터(<http://work.mma.go.kr>) 활용방법

✓ 용어해설

- **위반행위신고제도** :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 장의 지시로 부득이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는 등 복무관련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면책 받을 수 있음. 단 신고기한을 넘기면 면책을 받을 수 없음.

8-2.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담당자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 관할 지방병무청에서는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복무관리 담당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관리 요령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대상/시기

- ▶ 대상 :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 담당자
- ▶ 시기 : 1분기 중 실시
- ▶ 방법 : 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 등(교육 통보 시 안내)
※ 복무관리 담당자 교육에 불참한 경우 병역지정업체 평가 시 감점 처리

교육 통보

- ▶ 교육일시와 장소는 교육일 7일 전까지 병역지정업체의장을 거쳐 교육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 질병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곤란한 경우 교육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교육 연기자나 불참자는 다음 교육일시에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내용

-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취소, 인원배정, 복무관리규정 등
- ▶ 「병역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내용
- ▶ 산업지원 병역일터(<http://work.mma.go.kr>) 활용 방법 등
※ 복무관리 담당자는 교육 이후 해당내용에 대해 병역지정업체의 장 및 소속 전문연구요원 담당부서 직원 등에게 반드시 전달·공유합니다.

9

군사교육소집

9-1. 복무 중 군부대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받습니다.

- ▶ 전문연구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30일 이내의 기초군사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됩니다.(현행 3주)
- ▶ 군사교육소집은 편입 후 가급적 6개월 이내에 받게 되며 질병·가사정리·주요업무수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군사교육소집

- ▶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복무기간 중 기초군사교육을 받습니다.
- ▶ 국외근무 등의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 군부대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받습니다.
※ 전문연구요원이 군사교육소집을 받고 의무복무 중 편입 취소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군사교육소집 제외대상

- ▶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 ▶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 포함된 사람
- ▶ 신체등급 4급자 중 군사교육소집 제외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 같은 병명으로 반복 귀가(퇴영)된 사람 중 입영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치유기간을 합산하여 그 치유기간이 통틀어 6개월 이상 경과된 사람
 - 2가지 이상의 다른 질병으로 3회 이상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 중앙신체검사소 또는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군사교육소집이 어렵다고 인정하여 소견서를 작성한 사람
 - 사관학교 등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 퇴교자 중 복무기간에 포함되는 교육기간이 기본 군사훈련기간(15일) 이상인 사람
 - 전문연구요원 편입 전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
 - ☞ 군사교육소집 제외 신청방법
 - 군사교육소집제외 신청서(붙임 제22호 서식) 작성 제출
 - 군사교육소집 제외 관련 같은 병명의 인정 범위 및 치유기간 인정 등 세부기준(붙임 제23호)
- ▶ 전문연구요원이 아래 사항의 경우 군사교육소집 실시를 유보할 수 있음
 - 전직대기 중인 때(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나 잔여 의무복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전직 대기기간에서 제외)
 - 30일 이상 병가 중인 때



군사교육소집 본인선택

- ▶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군사교육소집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 ▶ 최초 편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접수일 기준 50일 이후 소집일자 본인선택 가능
- ▶ 신청방법 : 병무청 누리집(<http://www.mma.go.kr>) → 병무민원 → 전문/산업 → 전문 연구/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 본인선택
 - 편입후 통상 1~2개월 이후 군사교육소집이 직권으로 결정되므로 편입 직후 업무일정을 고려하여 본인선택하는 것을 권장



군사교육소집통지서 송달

- ▶ 입영일 30일 전까지 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 병역의무자 본인에게 송달



군사교육소집 연기

- ▶ 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질병, 주요업무 등 부득이한 경우 병역지정업체장을 거쳐 군사교육소집 일자를 연기할 수 있음



군사교육소집 결과정리

- ▶ 복무관리담당자는 「산업지원 병역일터」(<http://work.mma.go.kr>)-요원정보-요원명부 조회에서 군사교육소집 결과 확인하여 복무기록표 등을 정리



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의 범위

- ▶ 입영부대장은 군사교육소집 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영시킬 경우에는 기간, 퇴영사유 등을 명시하여 퇴영하는 사람의 인사명령서 등 관련서류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
- ▶ 퇴영사유
 - 훈련기간 중 직계 존·비속이 사망한 때
 - 범죄사실로 훈련 기간 중 형사입건 되는 때
 - 훈련기간 중 범죄행위를 한 때
 - 그 밖에 군사교육소집부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
- ▶ 퇴영자는 퇴영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군사교육소집 실시

〈군사교육소집 위반사례〉

- 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 받은 전문연구요원이 업무 사정상 다음에 군사교육을 받을 생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임의로 해당소집일자에 입소하지 않음
- ▶ 병역법 위반 : 편입취소

✓ 용어해설

- **퇴영** : 군사교육소집부대에서 군사훈련을 받는 도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중단하고 부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말함. 입영한 날부터 퇴영한 날까지의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

10 휴가, 병가 등

10-1. 휴가, 결근 시에 이렇게 처리합니다

- ▶ 전문연구요원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

- ▶ 전문연구요원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함(준용)
 - 연간 휴가일수 초과기간은 그 초과 기간만큼 연장복무
 - 연간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허가한 경우에는 휴가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 연간 휴가일수 초과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장복무

결근

- ▶ 전문연구요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조퇴·외출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예상치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후에 허가 받아야 함(붙임 제11호 서식 : 개인별 복무상황부)
 - ※ 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 → 잔여 연가 없을 시에는 연장복무 대상 →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 지방병무청장은 복무만료일 연장 조치, 무단 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그 기간의 5배의 기간만큼 연장 복무
- ▶ 1일 결근은 1일 연장복무 대상 → 통보 대상
 - ※ 그러나 결근이나 병가로 인한 연장복무 대상을 연가에서 공제한 경우는 연장복무 비대상 → 신상변동 통보 비대상
- ▶ 병역지정업체장은 전문연구요원의 무단결근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할 경우에는 “학칙”등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무단결근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붙임 제12호 서식)
 - ※ 무단결근기간 계산 시에는 휴일을 미포함, 무단결근으로 인한 연장복무기간 계산 시에는 휴일을 포함함.(다만, 무단결근을 제외한 결근기간, 휴직·정직기간 및 업체의 휴업·직장폐쇄 또는 영업정지기간 등의 기간계산과 연장복무기간 계산 시에는 휴일을 포함)
 - ※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 →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 및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 ※ 통틀어 8일 미만 무단결근 → 무단결근기간과 그 기간의 5배의 기간만큼 연장 복무
 - ※ 무단 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한 기간과 그 기간의 5배의 기간만큼 연장 복무

〈무단결근 연장복무 사례〉

- 전문연구요원이 1년 동안 규정된 1년의 연가일수 15일을 모두 사용하고 잔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판단하여, 5일 동안 무단결근 → 30일 연장복무

〈규정된 연가일수 초과 연장복무 사례〉

- 전문연구요원이 1년 동안 규정된 1년의 연가일수 15일을 모두 사용하고, 하루는 4시간 조퇴, 하루는 사적인 4시간 외출 → 8시간에 해당하는 1일 연장복무

10-2. 병가 및 병역처분변경 신청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 ▶ 전문연구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의무복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병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통틀어 30일 이하의 병가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합니다.

병 가

- ▶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의무복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병가신청 가능
- 병가기간이 연속하여 7일을 초과 시 진단서 제출
 - 의무 복무기간 중 통틀어 30일 이내의 병가기간(병가제도가 없어 질병사유로 휴직 또는 결근 처리한 사람 포함)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복무
 - * 30일 이내 병가기간 산정 시 휴일 미포함, 30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휴일 포함 기간 산정
 - * 병가초과 사유 신상변동 통보 시 '개인별 복무상황부' 등 관련서류 확인 후 처리
 - 다만, 병역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중 발생한 부상·질병 또는 장해(군인 사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상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함)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군 의료기관의 진단서상 치료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고,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근로자신분이 아니더라도 준용)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

- ▶ 전문연구요원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행하는 병무용진단서(단, 수술한 경우와 1개월 이상 입원 또는 6월 이상 통원치료한 경우는 해당병원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붙임 제13호 서식)를 출원하면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음
- ▶ 제출절차
-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
 - 병역지정업체의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

〈무단결근 연장복무 사례〉

- 전문연구요원이 편입하여 1년 동안 30일의 병가를 사용한 후, 다음 1년간 30일의 병가를 내고, 그 다음 1년 동안 30일 병가를 사용한 경우(단, 업무상 발생한 질병과 관련이 없는 병가)
▶ 60일 연장복무(통틀어 30일 초과기간)

✓ 용어해설

- **병무청 지정병원** : 병무청에서 지정한 병원으로 병무용진단서의 발행, 위탁검사 등을 실시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지정병원" 확인 가능)
- **병무용진단서** : 병무청에서 신체등급 판정 참고용으로 사용하는 진단서

11 편입취소

11-1.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되면 현역병(사회복무요원)으로 의무부과 됩니다.

- ▶ 전문연구요원은 박사학위과정에 제적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편입이 취소됩니다.
- ▶ 편입이 취소되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의무 부과됩니다.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 사유

- ▶ 휴학하거나 제적된 경우
- ▶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 ▶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8조의2(병역지정업체장의 4촌 이내 혈족 전직제한 규정)를 위반하여 전직을 하는 경우
- ▶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
- ▶ 의무복무기간을 35세(의무사관후보생은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 ▶ 복무 중인 대학원이 폐교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 또는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 전직허용기간 3개월(3개월 연장 가능)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
-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 용어해설

- **편입취소** : 전문연구요원 신분을 취소하여 편입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는 것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취소 사유〉

-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 휴학 등의 사유로 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35세(의무사관후보생은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 선발된 후 박사학위 수학(수료할 때까지)기간이 3년 6개월을 초과할 경우
-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 법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법 제87~88조(병역판정검사·입영의 기피 등)·법 제94조(국외 여행허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경우



편입취소자 의무부과 및 잔여복무기간 산정

- ▶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의무부과
- ▶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은 복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산출하며,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할 수 있습니다.

〈잔여 복무기간 계산 방법〉

- 현역병 입영 대상

$$\frac{\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text{복무한 일수}}{\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times \text{현역병 의무복무기간}$$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frac{\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text{복무한 일수}}{\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times \text{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

〈의무부과 후 복무기간 단축 사례〉

- ▶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1년 이상 의무복무 하다가 편입 전에 이루어진 병역비리사유가 확인되어 편입취소 된 경우 복무기간 단축
 - ▶ 병역법 위반 : 복무단축 없음(편입비대상자)

11-2. 위법한 편입취소사유 발생 시 편입취소 유보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병역지정업체가 위법하게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과정을 제적처리(중도포기 등)한 경우에 전문연구요원은 편입취소유보 신청을 하여야 하며, 쟁송결과 법원 등에서 위법·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 신분을 유지하며 당해 병역지정업체에 계속 근무하거나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할 수 있습니다.



편입취소 유보 신청

- ▶ 의무복무 중 병역지정업체에서 위법·부당하게 제적(중도포기 등) 박사학위과정을 본인의 의사가 아닌 학교에서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함)된 사람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인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편입취소를 유보합니다.
- ▶ 편입취소 유보를 원하는 사람은 학교에서 제적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 제3호 서식)
 - 구비서류 : 편입취소 유보신청서, 소송관계서류 등
-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편입취소 유보여부를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편입취소 유보결과 처리

- ▶ 법원소송결과 확정시 처리
 - 적법, 정당하게 제적된 경우 : 편입취소 후 의무부과
 - 위법, 부당하게 제적된 경우 : 복학 또는 전직 가능(구제 신청기간 복무기간 산입)
- ▶ 법원에 구제신청을 취하
 - 의무자가 정당한 제적으로 인정하고 제적의 효력이 확정된 경우 : 편입취소
 - 대학원이 부당성 인정하고 복학조치 등으로 의무자의 구제신청 목적을 달성하고 해당 학교에 계속 복무 : 신분유지(구제 신청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 법원의 화해가 성립되어 계속 복무중인 경우 : 신분유지(구제 신청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대학원이 부당성을 인정하고 화해한 경우 구제신청 소요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

〈편입취소 유보원서 미제출 사례〉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대학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제적되어 법원에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하였으나 지방병무청에 편입취소 유보원서 미제출 ➤ 편입취소

✓ 용어해설

- **편입취소 유보** :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과정에서 제적되면 지방병무청에 통보되어 편입취소 대상이나, 의무자가 관련기관에 구제신청을 하고 지방병무청에 편입취소유보 신청을 하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편입취소를 보류하고 전문연구요원 신분 유지

12 복무만료

12-1.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거나 제외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 ▶ 전문연구요원은 편입일로부터 의무복무기간이 산입되며 정직, 30일 초과 병가 등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기간은 의무복무기간 산입에서 제외합니다.

의무복무기간 산입

- ▶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한 날부터 의무복무기간 산입
- ▶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퇴교된 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그 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합니다.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질병으로 인하여 의무 복무하지 아니한 기간 포함) 또는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전문연구요원이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는 의무복무기간 포함)
 - ▶ 학교의 휴교처분(기념일 등 제외), 학칙에 의한 정직 등으로 인해 전문연구요원이 사실상 연구업무에 복무하지 않는 기간
 - ▶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적된 사람이 법원 등에 제적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적이 정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그 진행기간
 - ▶ 전직대기기간(14일 또는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 ▶ 병역지정업체 해당분야에서 복무하지 아니하여 연장 복무토록 결정된 위반기간
 -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미만의 무단결근 기간
 - ▶ 박사학위과정 수학기간
 - ▶ 기타 연가일수 초과한 연가기간, 결근기간 등
- ※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의무복무

✓ 용어해설

- **산입** : 포함하여 계산(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됨)

12-2. 복무만료 대상자를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 병역지정업체장은 전문연구요원이 복무만료 되는 전달 1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복무만료 대상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복무만료 대상자 통보

- ▶ 병역지정업체장은 의무복무기간 만료대상자를 복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복무만료 대상자의 복무기록표 원본과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 복무만료 대상자에 대한 통보 지연 - 시정조치(5점 감점)
 - ※ 복무만료통보 이후에도 의무복무만료일까지는 신상변동 발생사항 통보



복무만료 처분

-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기간을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복무만료 처분
- ▶ 전문연구요원이 국외근무 사유, 귀가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안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무만료 처분을 보류하고,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후에 복무만료 처분



복무만료 후 예비군 복무

- ▶ 의무복무를 마친 해의 다음해부터 8년차까지 예비군에 편성
 - 예비군 관련 방침상 병력동원예비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 경우 동원훈련을 받지 않으며, 일반예비군에 편성되어 지역방위훈련 참가

✓ 용어해설

- **복무만료** : 전문연구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는 것
- **동원훈련** : 전시 병력동원에 대비한 훈련으로 부대에 입영하여 훈련을 받음
- **향토방위훈련** : 주소지 지역 관할 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음

13 신상변동통보 및 서류 관리

13-1. 복무관리담당자는 신상변동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 ▶ 병역지정업체장은 전문연구요원이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상변동통보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 * 경로 : 「산업지원 병역일터」(<http://work.mma.go.kr>)-병역지정업체-업체정보 또는 요원정보
 - * 붙임 제28호 서식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전문연구요원 관련 신상변동통보 사유

- ▶ 병역지정업체에서 휴학하거나 제적하는 경우, 자퇴하는 경우 등 박사학위과정을 중단하는 때
 - 휴학·자퇴 등 : 휴학·자퇴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복무기록표
 - 제적 등 : 제적처분 관련 증빙서류, 복무기록표
- ▶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한 경우, 제37조제3항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유예기간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 ▶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얻은 경우
 - 진단서·복무기록표·복무상황부 사본(30일 초과 입증서류)
- ▶ 3개월 미만의 국내교육훈련 및 파견근무(출장)를 실시하게 된 경우
 - 출장 또는 파견 명령서 등 관련서류
 - ※ 7일 이내는 복무기록표 기재·정리로 갈음
- ▶ 병역지정업체 간에 파견근무를 하게 된 경우
- ▶ 결근, 무단결근, 병역지정업체 휴교처분, 정직 등 기타 사유로 의무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무단결근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관련 신상변동통보 사유

- ▶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 ▶ 휴학 등의 사유로 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35세(의무사관후보생은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 ▶ 박사학위 수학(수료할 때까지)기간이 3년 6개월을 초과할 경우
- ▶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병역지정업체 관련 신상변동통보 사유

- ▶ 병역지정업체가 휴교처분 등으로 전문연구요원을 복무시킬 수 없는 경우
- ▶ 병역지정업체로서의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 병역지정업체의 명칭 변경 및 소재지의 이전, 다른 학교 등과 합병한 경우
 - 각종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명서
 - 합병 : 법인등기부등본, 합병계약서 등 관련 증명서

〈위반사례〉

[신상변동통보/훈령상 통보 위반에 대한 처리(예)]

유형	위반사례	처리기준	가중처벌	수시평가(감점)
신상변동통보규정 위반 * 법 제40조, 영 제91조 * 행정조치(훈령 별표3)	여러사람에 대한 (동일한) 신상변동사항 미(자연)통보 시 예) 근무자 3명 무단결근 미통보 한사람에 대한 2건 이상의 (동일한) 신상변동사항 미(자연)통보 시 예) 무단결근일 1.3, 1.10. 미통보	사람별 건건 처리 (주의, 주의, 시정)	별표3-7 비대상	별표5 2-④ 건건 감점
훈령상 통보의무 위반 * 훈령 별표5, 5의2 * 수시평가 감점	여러사람에 대한 (동일한) 신상변동사항 미(자연)통보 시 예) 근무자 3명 결근(연장) 미통보 한사람에 대한 2건 이상의 (동일한) 신상변동사항 미(자연)통보 시 예) 결근(연장) 1.3, 1.10. 미통보	건수별 건건 처리 (주의, 주의) 건수별 건건 처리 (2건)	별표3-7 비대상 -	별표5 2-④ 건건 감점 별표5 2-⑩, 별표5의2 2-⑦ 건건 감점
		사람별 건건 처리 (3건)	-	별표5 2-⑩, 별표5의2 2-⑦ 건건 감점

* 가중처벌 : 주의 등의 해당 처분을 받은 후에 다시 주의 등의 해당 처분을 받게 되는 때

〈훈령상 통보의무〉

- 연차 초과 휴가·결근(지각·조퇴·외출 누계 1일 포함)에 따른 연장복무 : 제51조 및 제53조
- 연구요원이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복무로 다른 장소 근무 : 제36조
- 연구기관 규모 확대·축소 등으로 병역지정업체의 범위 변경 : 제13조
- 병역지정업체의 장 변경 : 제34조

13-2. 복무관리담당자는 복무관련 서류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 ▶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복무중인 전문연구요원에 대하여 명부, 복무기록표, 복무상황부, 출근부 등 각종 서류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명부

- ▶ 복무중인 전문연구요원을 편입일자가 빠른 순으로 정리(붙임 제15호 서식)



복무기록표

- ▶ 병역지정업체장은 복무기록표에 인적사항, 병역사항, 편입사항 등을 상세히 기록한 후 신상변동사항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 일체를 사유발생시 마다 빠짐없이 기재(붙임 제16호 서식)
 - 복무사항 란 : 보직(선박)변경, 해외연수, 박사과정수학, 교육훈련, 파견(출장), 업체 간 전직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
 - 신상변동 란 : 파견(출장), 교육훈련, 휴직, 정직, 승선, 하선, 병가, 결근, 조퇴, 외출 등 신상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
 - ※ 의무자 관련 병무청에 신상변동 통보한 사항을 기록
 - ※ 연속하여 7일 초과하는 병가 시 진단서 구비
 - 군사교육소집부대, 소집기간, 군번 란 : 군사교육소집 사항 기록
 - 병역지정업체의 장 확인 란 :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편입일로부터 매 1년마다 점검, 서명 날인(훈령 제74조)



복무상황부

- ▶ 개인별로 작성관리 하되 연가, 병가, 결근, 지각, 조퇴, 외출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병역 지정업체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붙임 제11호 서식)
 - 지각·조퇴·외출(공무상 외출 제외)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휴가 일수에서 공제하거나 연장복무



출근부

- ▶ 출·퇴근 기록은 개인별로 매일 파악하여야 하고, 지문 또는 홍채 인식이나 ID카드에 대한 전자식 및 기계식 관리 방식에 따라 매월 출·퇴근 기록을 출력(인장, 서명 등 수기식 제외)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함



복무확인서 발급

- ▶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발급해주어야 함(붙임 제17호 서식)



기타 서류

- ▶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자가진단표」(붙임 제21호 서식)
 - 매년 1, 4, 7, 10월 첫째주에 작성하여 복무관련 서류와 함께 관리하고, ‘아니오’로 체크된 경우 즉시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통보
- ▶ 신상변동통보서, 복무만료 관련서류, 국외체재기간 연구성과 확인서 등

14 ◀ 실태조사 및 평가

14-1. 병역지정업체는 병무청의 실태조사 및 평가를 받습니다.

- ▶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모든 병역지정업체에 대해 연 1회 이상 불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복무관리부실 업체 및 민원유발 업체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실시합니다.
- ▶ 병역지정업체장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료제출 거부 등 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병역지정업체 평가시 감점 처리됩니다.



실태조사관 편성

- ▶ 지역실정에 맞게 실태조사반을 편성, 조사대상 병역지정업체를 책임실태조사관별로 배정
- ▶ 실태조사관은 실태조사 시에 복무관리 실태조사 통보서(붙임 제18호 서식)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
- ▶ 실태조사관의 임무
 -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실태조사 및 행정처리 사항 상시 지원
 - 의무자 위반행위신고 접수·처리 및 고충상담 등 권리보호사항 지원



실태조사 주요 점검사항(규칙 제66조)

- ▶ 전문연구요원의 휴학·제적 여부
 - ▶ 편입당시의 병역지정업체 해당분야 복무여부
 - ▶ 국외여행허가자의 국외여행 목적대로의 업무수행 여부
 - ▶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충족 여부
 - ▶ 병역지정업체의 사정으로 연구업무 중단 여부
 - ▶ 병역지정업체의 명칭 변경 및 소재지의 이전 여부
 - ▶ 전문연구요원 명부와 복무기록표 등 관계서류의 비치 및 정리실태
 - ▶ 전문연구요원 신상변동과 병역지정업체 변경사항의 통보 및 자원관리 실태
 - ▶ 그 밖에 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와 관련된 사항
- ※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담당자는 복무관리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분기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이상 여부를 자체 점검(붙임 21호 서식)

✓ 용어해설

- **실태조사** :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 상태 및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병무청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함



실태조사 결과처리

- ▶ 실태조사 시 참석하지 아니한 전문연구요원의 미참석 사유(붙임 제19호 서식)를 파악하고, 병역지정업체장은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확인서(붙임 제20호 서식 참조) 및 관련 증빙자료를 실태조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 실태조사관은 위반내용 및 기간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에 대해 과태료 처분, 경고·고발·주의·시정 행정조치, 관련 직원 신분상 조치요구, 의무자에 대해서는 편입취소, 연장복무, 경고 등 행정조치를 함
- ▶ 실태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 제출 가능



주요 위반행위 내용

- ▶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근무(근무장소 위반)
 -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
 - 승인 또는 신상변동통보 없이 출장·파견 근무
- ▶ 편입당시 해당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 근무(해당업무 위반)
 - 편입 당시의 대학원 전공 관련 연구분야가 아닌 다른 연구분야에 근무
 - 사무직, 영업직, 관리직 등 연구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 근무
 - 편입당시 해당분야와 사무직, 관리직 등을 겸직
 - 병역지정업체의 이사·감사 등 임원을 겸직
 - 수학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 등
- ▶ 신상변동통보 규정 위반/훈령상 통보규정 위반
 - 신상변동통보 사항을 허위로 통보
- ▶ 지연통보 또는 통보하지 않는 사례 등
- ▶ 각종 서류 관리 또는 정리 소홀
 - 전문연구요원 명부, 출퇴근관리, 복무기록표, 개인별 복무상황부, 국외체재 중 업무 수행 상황부 등 부책관리 서류 미관리 또는 미정리
 - 복무만료통보를 지연하여 통보 등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 ▶ 병무청장은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신고된 경우에는 소속직원 또는 관할 지방 병무청 직원에게 실태조사 지시(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경우는 제외)
 - 당해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위법한 행위
 - 영업직·사무직·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와 같은 다른 분야에 복무하는 사실 등
- ▶ 조사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조사하고 조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
- ▶ 조사결과 병역지정업체에 대해 고발, 경고 또는 주의처분을 한 경우 신고한 자(법인 포함)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
 - 일반국민 : 「병무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포상
 - 전문연구요원 : 「병무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포상(본인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제외)

14-2. 병역지정업체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시 복무관리실태 등을 평가합니다.
- ▶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 평가결과를 인원배정 등에 반영합니다.

평가 대상 및 방법

- ▶ 모든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복무관리실태를 평가
- ▶ 기본평가(80점) :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시 복무관리실태 평가(매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
- ▶ 수시평가 : 제도 운영 실태 등 가·감점요소 평가(연중)
- ▶ 종합평가 : 기본평가 점수와 수시평가 점수를 합산(매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
 - 종합평가 점수 60점 이상 : 다음 해 인원배정 대상
 - 종합평가 점수 60점 미만 : 다음 해 인원배정 제한

기본평가 항목 및 배점

- ▶ 3개 항목 평가사항에 대해 80점 만점 평가

항 목	점검 및 평가 내용	배점	점수	확인요령
기 본	복무사항 (35점)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 해당분야 복무 여부 및 출·퇴근 등 근무상황 통제 적정 여부	35	복무현장 등 확인 출근부 등 확인
	행정사항 (30점)	신상변동사항 통보, 부책 관리, 승인 등의 적정성 여부	30	신상변동통보서 등 확인 부책관리 등 확인
평 가	복무만족도 (15점)	의무자 복무 만족도	15	의무자 면담
	※ 2회 이상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각 회마다 기본평가 점수를 부여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하거나 최종점검 시 기존 점검결과를 고려하여 1회 평가 가능			

수시평가 항목 및 배점

- ▶ 가점요소 5개 항목 및 감점요소 8개 항목 평가
- ▶ 가점요소

- ① 전문연구요원의 과학기술우수실적 또는 연구개발활동 우수 사례가 있는 경우 10점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병역지정업체에서 직접 신청(매년 9월중/신청절차 등 관할 지방병무청 별도 안내 예정)
- ② 지정업체의 총 신상이동통보 건수(A) 중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을 이용한 신상이동 통보 건수(B)의 비율이 높은 경우

구 분	A가 5건 미만 경우 B/A 90% 이상	A가 5건 이상 경우 B/A 80% 이상
점 수	10	10

③ 실태조사 적극 수감 등 병무행정에 협조한 경우 10점

④ 복무인원에 따른 복무관리 난이도가 높은 경우

구 分	복 무 인 원				
	10명 미만	10명 이상 50명 미만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명 이상 200명 미만	200명 이상
점 수	-	5	10	15	20

⑤ 복무자 중 50% 이상 편입자 재교육 및 또는 복무관리 담당자 재교육을 수료한 경우 각 5점(최대10점)

⑥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사항 10점

▶ 감점요소

① 지정업체 인사담당 교육에 불참한 경우 5점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편입자 복무교육에 교육대상자를 불참시킨 경우 5점

③ 병무행정과 관련 민원야기 또는 불미스런 사항이 언론에 보도된 경우

※ 민원 견당 5점, 보도 견당 10점(확인 결과 무고인 경우 제외), 업체가 투서·고발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20점

④ 자료제출 부실 등 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10점 범위 내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식 출퇴근관리시스템을 미 도입한 경우 10점

⑥ 국외체재자(단기여행 제외)의 업무수행 상황부 작성 또는 관리가 미흡한 경우 10점

구 分	“수행업무 내용” 구체적 미기재	작성 또는 관리 미흡	비 고
점 수	5	10	국외체재자 복무관리 강화

⑦ 훈령에 규정된 통보의무 미준수, 「복무관리 자가진단」 미실시

구 分	1건	2건	3건 이상	비 고
감 점	통보의무	5	10	20
	자가진단	5		자율적 복무관리 체계 확립

⑧ 기타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이 정하는 사항 10점



평가결과의 적용

- ▶ 종합평가 점수 60점 이상 업체 : 인원배정 대상
- ▶ 종합평가 점수 60점 미만 업체 : 당해연도 배정인원(영 제78조의3제2항에 따라 선발한 인원)의 5~10%를 다음해 배정인원에서 제외(평가 50점 미만 경우 10%), 인사담당자 교육 등
- ▶ 병역지정업체별 평가 결과는 다음해 1년간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등에 공개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 (훈령 별표 4의2)

자연계대학원 및 과학기술원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항 목		점검 및 평가 내용	배점	점수
기 본 평 가	복무사항 (35점)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 해당분야 복무 여부 및 출·퇴근 등 근무상황 통제 적정 여부	35	복무현장, 출근부 등 확인
	행정사항 (30점)	신상변동사항 통보, 부책 관리, 승인 등의 적정성 여부	30	신상변동통보서, 부책관리 등 확인
	복무만족도 (15점)	의무자 복무 만족도	15	의무자 면담
※ 2회 이상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각 회마다 기본평가 점수를 부여하여 평균점을 산출하거나 최종점검 시 기존 점검결과를 고려하여 1회 평가 가능				
수 시 평 가	가점요소	1. 전문연구요원의 과학기술우수실적 또는 연구개발활동 우수 사례가 있는 경우	10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 확인
		2.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이용 신상변동 통보율이 높은 경우	10	
		3. 실태조사 적극 수감 등 병무행정에 협조한 경우	10	
		4. 복무인원에 따른 복무관리 난이도가 높은 경우	-	
		5. 복무자 중 50% 이상 편입자 재교육 또는 복무관리 담당자 재교육을 수료한 경우	10	
		6. 그 밖에 지방병무(지)청장이 정하는 사항	10	
	감점요소	1. 병역지정업체 인사담당 교육에 불참한 경우	5	
		2. 신규편입자 교육에 불참한 경우	5	
		3. 민원 야기 및 불미스런 언론보도 된 경우	-	
		4. 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10	
5. 전자식출퇴근관리시스템 미도입		10		
6. 국외체재자(단기여행 제외)의 업무수행 상황부 작성 또는 관리가 미흡한 경우		-		
7. 훈령에 규정된 통보의무 미준수, 「복무관리 자가진단」 미실시		-		
8. 그 밖에 지방병무(지)청장이 정하는 사항		10		
종합평가		점	평가결과	60점 이상 / 60점 미만
구 분	기본평가	종합평가	전년 평가결과	
평가일자	20 . . .	20 . . .	행정조치사항	
평가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배정제한기간	~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15 벌칙 및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

15-1. 병역법 위반에 대한 벌칙입니다

- ▶ 병역지정업체장이 신상변동통보를 하지 않거나 전문연구요원을 해당분야에 복무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 (법 제85조)

- ▶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수령 또는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법 제89조의2)

- ▶ 전문연구요원이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 편입이 취소된 경우 또는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편입취소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과태료 (법 제95조제1항)

- ▶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을 관리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고용주는 제외한다)이 법 제3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의무복무중인 사람을 그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40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법 제94조)

- ▶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용어해설

-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수령·전달 의무** : 전문연구요원 군사훈련통지서를 고용주 등에 전달한 경우 그 통지서를 받은 사람

15-2. 복무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리 기준은?(훈령 별표 3)

복무관리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기준

유형	내용	위반기간	행정조치
1.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사업장)가 아닌 다른 업체 근무 등	가. 편입당시부터 병역지정업체(사업장)가 아닌 다른 업체에 근무시킨 때		고발
	나.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시킨 때	1월이상	고발
		1월미만	경고
		3월이상	고발
		1월이상 3월미만	경고
	다. 승인 또는 신상변동 통보 없이(지연통보 포함) 교육훈련·출장·파견근무시킨 때	15일이상 1월미만	주의
		15일미만	시정
2. 편입당시 해당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 근무 등	가. 편입당시 해당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연구, 제조·생산 외의 사무, 영업 등 분야)에 근무하게 하거나 겸하여 근무시킨 때	1월이상	고발
		1월미만	경고
		3월이상	고발
	나. 편입당시 연구·기술자격·면허분야가 아닌 다른 연구·기술자격·면허분야에 근무하게 하거나 겸하여 근무시킨 때	1월이상 3월미만	경고
		1월미만	주의
3. 수학금지 규정위반	의무복무기간중 신상변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도록 허용한 때	6월이상	고발
		6월미만	경고
4. 겸직금지 규정위반		3월이상	고발
	병역지정업체의 이사·감사 등 관리직을 겸직하고 있거나, 연구 또는 제조·생산에 지정이 있는 다른 영리활동을 하도록 한 때	1월이상 3월미만	경고
		1월미만	주의
5. 신상변동 통보규정 위반	가. 허위통보		고발
	나. 의무자 편입취소와 관련된 사항 미통보(지연통보 포함)	1월이상	주의
		1월미만	시정
	다. 의무자 편입취소와 관련 없는 의무자 및 업체 관련 사항 미통보(지연통보 포함)	3월이상 3월미만	주의 시정
6. 자원관리 소홀	가. 복무기록표, 명부, 개인별 복무상황부, 출근부 등 제73조 규정에 따른 복무관리서류 미관리, 제32조제7항에 따른 유연근무 승인 신청서 미관리, 유연근무 운영계획 미수립 및 공동근무시간 미운영		시정
	나. 복무기간만료 통보 지연	10일이상	시정
	다. 제32조제7항에 따른 유연근무 실시자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출퇴근 관리 미실시		시정
7. 동일사항 반복위반 가중처벌	경고·고발을 받은 후 다시 경고를 받게 되는 때		고발
	주의·경고·고발을 받고 다시 주의를 받게 되는 때		경고
	시정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때와 2회 이상 시정을 요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주의·경고·고발 후 다시 시정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의

※ 비 고

- 가중처벌 여부는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내에 위반사항 유무에 따라 결정한다.
- 동일사항이란 위반내용 가, 나, 다, 라 "목"이 있는 경우는 각각의 "목"내에서의 내용을 동일사항으로 본다.
- 제5호 다목의 신상변동통보사항 중 교육훈련, 출장, 파견근무 등 다른 업체 근무사유에 대한 규정위반은 제1호다목(1월 미만의 교육훈련, 출장, 파견근무 등 일수계산시 공휴일, 토요일·일요일은 미산입)을, 수학금지 규정위반은 제3호를 적용한다.
- 제5호 및 제6호의 위반기간은 각각 발생한 단일 건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제5호 신상변동 통보규정 위반 시 여러 사람에 대한 위반 및 한 사람에 대한 2건 이상의 위반은 각각의 건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동일시점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가중처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연장기준 등(병역법시행령 별표 3)

[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연장기준 등]

(제91조의3제2항 관련)

유형	내용	처리기준	
		위반기간	의무자
1. 편입 당시 병역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근무	가.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경우		연장 복무
		3개월 이상	연장 복무
	나. 승인 또는 신상변동 통보 없이 교육훈련, 출장, 파견근무를 한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경고
		1개월 미만	시정
2. 편입 당시 해당 분야가 아닌 분야 근무	가. 편입 당시의 연구분야가 아닌 사무직, 영업직 등 다른 분야에 근무한 경우		연장 복무
		3개월 이상	연장 복무
	나. 편입 당시의 연구분야가 아닌 다른 연구분야에 근무하거나 편입 당시의 분야와 겹하여 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경고
		1개월 미만	시정
3. 겸직금지규정 위반	병역지정업체의 이사·감사 등 임원을 겸직하거나 연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영리활동을 한 경우	1개월 이상	연장 복무
		1개월 미만	경고
4. 수학규정 위반	의무복무기간 중 신상변동 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경우		연장 복무
5. 동일사항 반복 위반	가. 연장 복무 후 다시 연장 복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편입 취소
	나. 경고 이후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연장 복무
	다. 시정 이후 다시 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 용어해설

- **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연장기준 등(영 별표3)** : 병역지정업체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 병역지정업체장의 지시가 아닌 전문연구요원 본인 스스로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 복무하지 않는 경우 위 별표 적용 없이 편입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짐



자연계대학원 과태료 처분 기준 (병역법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1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병무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였거나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병무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경우라도 법 제9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증대하여 국민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해당 법 규정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그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5조 제1항 제1호			
1) 편입 당시의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게 하지 않은 경우 가) 1개월 미만 나)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다) 3개월 이상		300 600 1,200	400 800 1,600	500 1,000 2,000
2)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게 하지 않은 경우 가) 1개월 미만 나)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다) 3개월 이상		150 300 600	200 400 800	250 500 1,000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0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의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95조 제1항 제2호			
1) 신상변동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2,000	2,000	2,000
2) 법 제4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가) 1개월 미만 나)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다) 3개월 이상		300 600 1,200	400 800 1,600	500 1,000 2,000
3) 법 제40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가) 1개월 미만 나)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다) 3개월 이상		50 100 200	100 150 300	150 200 400
다. 법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공을 거부한 경우	법 제95조 제2항	100	300	500
라.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95조 제3항	100	200	300

16 전문연구요원 권리보호

16-1. 전문연구요원 권리보호를 위하여 「권익보호상담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의 근로권익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 병무청에서는 전문연구요원 복무조건 차별, 폭행 등 고충처리 전담을 위해 「권익보호 상담관」을 지정·운영하여 전문연구요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익보호상담관 지정·운영

- ▶ 14개 지방청에서 권익보호상담관을 지정, 권익침해사례를 상담·처리하여 복무조건 차별, 폭언·폭행 등 부당한 대우 사례가 적발될 경우 병역지정업체는 배정제한(평가 불합격 시 배정인원의 5~10% 제외), 전문연구요원은 전직 희망 시 전직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고충상담 절차

- ▶ 전문연구요원이 권리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
 - 해당병역지정업체 관할 지방병무청 권익보호상담관에게 연락하여 권리침해사례 설명
 - 권익보호상담관은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고충상담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 접수·처리부」를 관리하고,
 - 권리침해 여부를 조사(필요시 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 권리침해가 사실대로 확인될 경우 화해, 전직 등 실효적인 조치를 취함.

〈산업지원인력의 근로권의 침해 사례〉

- 서울 소재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근로감독관과 합동실태조사 실시
 - ▶ 병역법 위반 : 병역지정업체 배정제한, 의무자 계속근무



병역지정업체 조사절차

- ▶ 병역지정업체에서 권익침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인 사실을 수집(필요시 근로감독관 동행 등 유관기관과 협조), 면담, 확인서 작성
- ▶ 접수부터 처리결과까지 추적관리, 위반행위 확인 대학원 등 후속처리
※ 통화내용, 관련자료 등 관리·유지, 신고인 비밀 유지 철저



병역의무자 사후 지원

- ▶ 고충상담을 신청한 자 중 감정 손상 등 복무전념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권익보호상담관은 대면·통화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상담을 진행

지방청별 권리보호상담관 연락처

청 별	전화번호	청 별	전화번호
서 울 지방병무청	02)820-4563, 4411, 4425	충 북 지방병무청	043)270-1352, 1311
부산·울산 지방병무청	051)667-5323, 5259, 5254, 5257	전 북 지방병무청	063)281-3312
대구·경북 지방병무청	053)607-6313, 6282, 6284	경 남 지방병무청	055)279-9314, 9256
경 인 지방병무청	031)240-7258, 7287, 7379	제 주 지방병무청	064)720-3255, 3217
광주·전남 지방병무청	062)230-4315, 4254	인 천 병무지청	032)454-2313, 2283
대전·충남 지방병무청	042)250-4314, 4453, 4256	경기북부 병무지청	031)870-0810, 0253
강 원 지방병무청	033)240-6309, 6255, 6266	강원영동 병무지청	033)649-4216

부 록

- ▶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54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병역지정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 ▶ 선정신청은 추천권자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 ▶ 연구기관 선정기준
 - 자연계대학원은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원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접수
 - 추천권자인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업체별 필요인원을 기재하여 병무청에 송부
 - 물적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시설 보유
(연구공간 및 연구기자재 포함)



선정취소 후 재선정에 관한 사항

- ▶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유형은
 - 업체의 장 스스로 병역지정업체를 반납하는 경우
 - 2년 이상 미채용 또는 1년 이상 선정기준 미달 등 「병역법시행령」 제76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원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재선정 불가



인원배정에 관한 사항

- ▶ 인원배정 신청은
 - 추천권자에게 매년 6월30일까지
- ▶ 다음해 인원배정 제한
 - 불합격 업체 : 1년간(당해연도 배정인원의 5~10%를 다음해 배정 제외)



편입원 출원에 관한 사항

- ▶ 편입원 출원 시 확인할 사항은
 -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의 병역사항이 맞는지
 -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인지
 - 담당업무가 전공 등의 해당분야가 맞는지

▶ 편입원 출원 절차는

- 병역의무자가 박사학위과정 수료일 14일 전에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편입원 접수
-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 편입원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출원(병역의무자 입영/소집일 5일 이내)



편입대상에 관한 사항

▶ 전문연구요원의 편입대상은

- 교육부에서 실시한 선발시험에 합격(과학기술원생은 자체 선발),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

▶ 편입제한 대상은

-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된 사람
- 병역의무(병역판정검사, 현역입영, 사회복무요원소집)를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미허가, 미귀국)한 사람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 전문연구요원 무단결근

- 학칙 등에 따라 처리
- 무단결근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에 신상변동통보

▶ 병역지정업체 인사담당자 및 신규편입자 복무관리 교육에 참석

- 불참 시에는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평가 시 감점
-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에 반영

▶ 복무중인 의무자가 전직승인신청서를 업체의 장에게 제출 시

- 「업체의 장 동의 여부」가 전직의 전제조건이 아님
- 업체의 장은 전직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 7일 이내의 국내 교육훈련·파견(출장)은

- 「복무기록표」 기재 시 신상변동통보를 갈음
- 복무기록표 정리 및 관리에 철저



비병역지정업체 비해당분야 관련 사항

▶ 비병역지정업체란

- 동일법인 내의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다른 연구소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다른 법인의 연구소
 -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 병역지정업체 내의 다른 법인 또는 개인 업체
- ⇒ 위반기간 및 장소에 따라 업체 주의, 경고, 고발 및 의무자 편입취소, 연장복무

▶ 비해당분야란

- 고등교육법에 제14조에 따른 교원(전임강사 이상 교수)업무
 - 총무, 영업 등 일반 사무직 업무
- ⇒ 위반기간 및 근무내용에 따라 업체 주의, 경고, 고발 및 의무자 편입취소, 연장복무

▶ 개인영리활동이란

- 근로시간 중에 다른 업무(개인사업, 강의 등)



전직 등에 관한 사항

▶ 전직 대상 및 절차는

- 당연전직 :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등
- 승인전직 :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병역지정업체인 기업부설 연구소 등)에 복무를 원하는 경우
- 병역의무자가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전직승인신청서 접수 시 14일 이내에 전직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병역지정업체의 신상변동통보 사항

▶ 병역지정업체와 관련된 신상변동 사유는

- 병역지정업체 명칭·연구분야의 변경, 소재지 이전
 -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병역법시행령 제72조)에 미달하게 된 경우
- ⇒ 관할 지방병무청장,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에게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통보

▶ 전문연구요원과 관련된 신상변동 사유는

- 박사학위 취득 또는 박사학위과정의 종도 포기
- 병가(통틀어 30일을 초과 시)
- 무단결근,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 해당분야 미복무, 결근·연가초과 휴가 등 연장복무 대상

- 교육훈련 또는 파견근무(3개월 미만)
 - ※ 7일 이내인 경우에는 복무기록표의 기재·정리로 갈음
- 파견근무(병역지정업체간)
 - ⇒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통보



서류관리 관련 사항

- ▶ 전문연구요원 명부
 - 편입결과 통보 접수 즉시 편입일자 빠른 순으로 등재 관리
- ▶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록표
 - 명부와 일치시켜 관리
 - 기록내용 : 군사교육소집 사항, 각종 통보 및 승인사항
 - 당연전직 시 의무자에게 전달, 승인전직 시 전직업체에 전달
 - 복무만료대상자 통보 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 개인별 복무상황부
 - 지각, 조퇴, 병가, 휴가, 외출 등 개인별 복무상황 기록
- ▶ 출·퇴근 기록
 - 개인별로 매일 출력하여 따로 관리
- ▶ 기타 관리서류
 -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자가진단표」
 - 관련법령 및 실무교재
 - 신상변동 및 의무복무기간 만료 관계철
 - 국외여행결과서
- ▶ 서류관리 부실에 따른 행정조치
 - 복무기록표 등 각종 부책관리 서류 미관리 및 미정리 : 시정
 - 복무만료대상자 통보 10일 이상 지연 : 시정

서식

1. 처분 사전 통지	60
2. 의견제출서	62
3.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63
4.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65
5. 진술서	67
6. 채용 동의서	68
7.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	69
8.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취소) 신청서	70
9. 국외체재 중 업무수행 상황부	72
10. 파견자 성실 복무관리 서약서	74
11. 개인별 복무상황부	75
12. 무단결근 확인서	76
13.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77
14. 의무복무기간 만료 처분 통보	79
15. 전문연구(산업기능) 요원 명부	80
16.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	81
17.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83
18. 복무관리 실태조사 통보서	84
19. 실태조사 참석 현황	85
20. 실태조사 사항 확인서	86
21.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자가진단표	87
22. 군사교육소집 제외 신청서	89
23. 귀가자(퇴영 포함) 등 군사교육소집 제외 기준	90
24.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사용권한 신청서	91
25. 4촌 이내 혈족 확인서	92
26. 전직 의견서	93
27. 전직대기자 관리 명부	94
28.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95
29. 병역이행일 등 신청(희망시기변경·취소 신청)서	96
30.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학위취득 유예기간 부여 신청서	98
31.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유예기간 부여 신청자 명단	99
32. 유연근무 신청(변경)서	100

[붙임 제1호 서식]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 9.29.>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 사전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정된 처분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된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시어 20 까지 우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 근거		

붙임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부. 마침.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공무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자료]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처분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을 이용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는 의견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의견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3. 직접 행정청을 방문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2호 서식]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9.29>

의견제출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처분 사전 통지 ※ 관련문서번호: (20)		
대상자	성명(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E-mail	
의 견			
기타 첨부자료 등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작성요령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예정된 처분의 제목”란에 “처분 사전 통지” 안내 문서의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의견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하시고,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붙임 제3호 서식]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개정 2020. 12. 30.>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등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처리기간	전문연구 편입: 5일, 산업기능 편입: 2일 전직, 교육훈련, 파견근무(출장), 편입취소 유보: 3일		
구분	[]편입 []전직 []교육훈련 []파견근무(출장) []편입취소 유보			
공통 기재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최종학력	년 월 일	학교	년(졸업, 휴학, 중퇴, 야간대 재학)
	병역지정업체 (재직)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항	업체명·지방자치단체 소재지 근무부서 * 박사학위과정	업체취업일(승선 예정일)·후계농어업경영인 선발일 담당업무·사업작목 대표자 성명 및 대표자와의 관계 (주)연구실 (주)실험실	
	의무복무 기간	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 산입 제외기간 및 사유(편입지원 신청자는 적지 않습니다)	년 월 일 - 년 월 일(년 개월)	
	전문연구 요원	학위 []학사 []석사 []박사 학교명(학과)	학위명(학위번호) 입학일 []휴(퇴)학일, []수료일, []졸업일	학위취득일
산업기능 요원	자격·면허명 및 등급(입상대회명, 분야 및 등위)	자격취득일(입상일)		
병역사항	[]현역 []보충역	입영(소집) 예정일		
전직 등	전직	업체명 전직사유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대표자와의 관계	
	파견근무 교육훈련	업체(기관)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개월)	
	편입취소 유보	해고사유 해고 구제(소송) 신청기관	해고일 해고 구제(소송) 신청일	
「병역법」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78조의3,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병역의무자와의 관계 :				
업체(기관)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뒤쪽)

첨부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편입신청	공통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약정근로 조건 이행 서약서 1부	
	전문연구요원 1.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학위수여증명서 (학위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를 포함합니다) 1부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2.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수료관계 증명서 1부	
	산업기능요원 1.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해기사면허증 사본 1부(현역 병입영 대상자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정보처리 직무분야: 정보처리 관련 학과의 전공, 기술훈련 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복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료증명서,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등의 서류 3. 후계농어업경영인: 후계농어업경영인 확인서 1부 4.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 없음	1.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현역병입영 대상자만 해당 합니다) 2.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 수리요원: 운전·운송, 건설기계 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파견근무 교육훈련 복무기록표 사본 1부	
	편입취소 유보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 사본 1부 또는 법원에 제출한 소송관계 서류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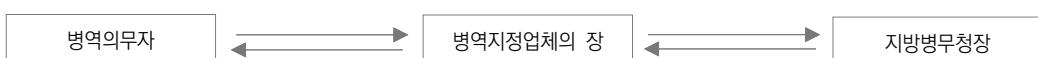
작성방법

편입신청	1. 대표자는 모기업의 대표이사를 말하며, 관계는 본인과의 관계(예: 부, 모, 조부 등)를 반드시 적습니다. 2. 신청기관은 전문연구요원과 기간 및 방위산업체의 산업기능요원은 업체의장을,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을 적습니다. 3. 기능특기자는 입상대회명, 분야 및 등위(1, 2, 3등)를 적습니다.
전직 등	대표자는 모기업의 대표이사를 말하며, 관계는 본인과의 관계(예: 부, 모, 조부 등)를 반드시 적습니다.

처리절차

①편입원서 제출

②편입원서 접수



④처리결과 통보

③처리결과 통보

[붙임 제4호 서식]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개정 2020. 12. 30.>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앞쪽)

개별약정		
서약 당사자	피고용인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병역지정업체 (고용주)	업체명 전화번호(복무관리 담당자) 소재지
		본 계약을 위한 기관 또는 대리인 성명 본 계약을 위한 기관 또는 대리인 직위
근로조건	취업장소(근무지·사업장주소)	취업일·후계농어업경영인 선발일
	복무해야 할 업무(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근로시간	휴가
	시간외 근무에 대한 특약 임금 지급방법(연봉, 월급 등)	

그 밖의 특별약정(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적습니다)

본 서약의 당사자들은 「병역법 시행령」 제77조의2, 제78조제3항, 제79조제2항, 제80조제2항, 제8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51조,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피고용인(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서명 또는 인)

병역지정업체(고용주)의 본 계약을 위한 기관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부당노동행위나 임금체불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을 통해 법률구조(상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기관[지방병무(지)청]은 이 서약서의 사본을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편입원서와 함께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일반약정

1. 본 서약은 병역지정업체(고용주)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피고용인) 간의 고용계약내용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준수사항
 - 가. 편입 당시의 연구 또는 제조·생산 분야 등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에서 성실히 복무해야 하며, 특히 고용주의 이해에 반하여 이득의 취득, 영업비밀의 유출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해야 한다.
 - 1)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 2) 복무 중인 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3)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 4)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 다. 병역지정업체의 장(고용주)의 위법·부당한 직무 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병역지정업체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게 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라. 병역지정업체로부터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한다.
 - 마. 군사교육소집에 적극 참여하여 입영훈련에 최선을 다한다.
 - 바. 후계농어업경영인은 농어업 외 사업부 취업, 개인 영리활동 등 다른 분야 근무 또는 겸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 _____ (서명 또는 인)

3. 병역지정업체의 장(고용주)의 준수사항
 - 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조건으로 병역의무자들에게 금품 또는 부당행위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을 편입 당시의 연구 또는 제조·생산 분야에 성실히 복무하게 해야 하며, 정당한 절차에 따른 복무업무의 변경을 받기 전까지 편입 당시 외의 업무에 복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 다.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을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서 같은 업무에 복무하는 일반 근로자와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징집·소집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어떠한 부당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 마. 전직제한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전직을 희망할 때에는 즉시 전직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정하는 전직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본 서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고용주 : _____ (서명 또는 인)

[붙임 제5호 서식]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1. 9.29.〉

진술서

인적사항	업체명	직책	
	성명	생년월일	
편입현황 및 진술내용	편입인원 (진술일 현재)	전문연구요원	명
		산업기능요원	명
	4촌이내 혈족중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전직시킨 인원	전문연구요원	명
		산업기능요원	명
	※ 편입·전직시켰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진술내용			

「병역법 시행령」 제8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진술합니다.

년 월 일

진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붙임 제6호 서식]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20호서식] <신설 2016. 5. 2, 개정 2016.11.30. 2017. 7. 3, 2019. 5.31.>

채용 동의서

(전직승인 신청서 첨부 서식)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 하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편입일자	역종 [] 현역 [] 보충역	
취업예정업체	자격면허명 <small>*현역 산업기능요원만 기재</small>	자격면허 번호	취득일
	업체명	전화	
	업체 주소		
	대표이사 성명	입사예정일	
주생산품목/주연구분야	근무예정부서		
<small>*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현역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본인 자격증에 맞는 업무를 기술합니다.</small>			
담당업무내용			
업체장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부모 <input type="checkbox"/> 혈족2촌 <input type="checkbox"/> 혈족3촌 <input type="checkbox"/> 혈족4촌 <input type="checkbox"/> 관계없음		
안내사항	대표이사(병역지정업체가 기업부설연구기관인 경우 모기업을 말함)와 4촌 이내 혈족인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할 시 「병역법」제41조1항 같은 법 제92조2항에 따라 의무자는 편입취소 되고, 업체장은 고발조치됩니다.		

위와 같이 취업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취업예정 업체(기관)의 장
(취업동의서 발급업체의 장)

직인

210mm × 297mm[백상지 80g/m²]

[붙임 제7호 서식]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7호서식]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

여행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추천내용	여행국	
	여행목적	*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추천) 기간	*실제 출국예정 일자부터 입국예정 일자까지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및 공휴일포함) 20 . . . 부터 20 . . . 까지
	* 단기여행의 경우 기재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연가일수(), 사용한 일수() -1년차 연가일수(), 사용한 일수() -2년차 연가일수(), 사용한 일수()• 금회 국외여행 시, 연가 사용 예정 일수()
		[] 공가 [] 특별휴가 [] 병가 [] 경조(청원)휴가 기간 : 20 . . . 부터 20 . . . 까지

「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여행허가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발급 담당자 성명

(연락전화 :) (서명 또는 인)

소속기관(업체)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붙임 제8호 서식]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서식] <개정 2021.10.14.>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취소) 신청서

※ 유의사항과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국외여행허가 2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10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취소 1일							
병역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국내								
	국외									
병역사항 (허가기관 기재사항)			대조							
			확인							
최초 허가신청	당초 허가번호	제 호								
	여행기간	.	.	~	.	.	(년	월	일간)
	여행국명				여행목적					
국외체류 증인 사람 기간연장 허가 신청	재외공관장 확인 : (인)			접수 및 확인번호						
	최초 허가사항	여행 목적			여행국명					
		병무청 허가번호			출국 연월일					
		병무청 허가기간 20 . . . ~ 20 . . . (일간)								
	기간연장 허가 신청	체재목적			체재국명					
		기간연장 요청기간 20 . . . ~ 20 . . . (일간)								
허가 취소 취소 사유(필요한 경우 작성):										
국내 가족사항 [기간연장] 허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	성명	관계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병역법」 제70조제1항 ·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부터 제147조까지 및 제14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첨부서류

구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국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한다) 및 해외공연에 참가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학교장, 대한체육회장 또는 소속 프로경기단체법인의 추천서	없음
연수· 견학 및 문화교류의 경우	해당 기관의 계획서 또는 허가서	없음
국외파견 및 국외출장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국외출장 증명서 또는 파견명령서	없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및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근로계약서	없음
국외취업의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확인한 취업증명서	없음
질병치료의 경우	병무용 진단서	없음
유학의 경우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없음
국외이주의 경우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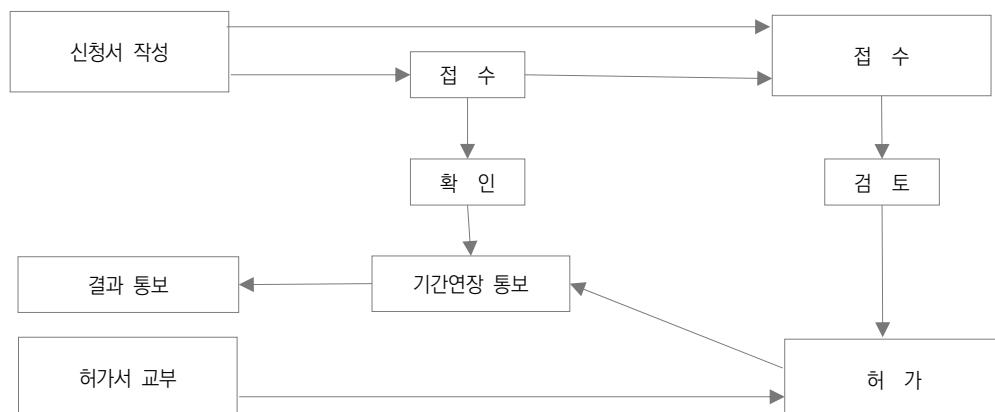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6조제5항 및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 및 제재를 받게 됩니다.
 - 형사처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제재내역
 - 공무원 및 임직원의 임용 및 관리업의 인허가 등 제한(40세까지)
 - 국외여행허가의 제한
 - 인적사항 등의 공개
 -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함.

신청서 처리 절차



[붙임 제9호 서식]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1. 9.29, 2015. 5.19, 2017. 7. 3, 2018. 3.16.〉

국외체재 중 업무수행 상황부

(The statement of work during stay abroad)

(앞쪽)

인적사항 등 (Personal details)	성명(Name)	생년월일(date of birth)	편입일(entry day)
	소속 병역지정업체명(research institute designated for military service)/국내주소(address)		
국외출장사항 (details of overseas business trip)	여행국(country)	여행목적(purpose)	기간(period)
	국외체재 업체(연구소)명(name of research institute) / 주소(address)		
기간 (period)	출퇴근 상황 (commute)	수행업무 내용 (details of performing business)	
(작성예시) 1. 1(월).~ 1. 5.(금)	정규 출퇴근 시간(ordinary starting/closing time) 출근시간(starting time): 퇴근시간(closing time):	연구과제명(title of reserch): ※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 업체 평가 시 감점	
	월요일 (MON) 출근시간(starting time): 퇴근시간(closing time):	과제 수행을 위한 요일별 세부 활동 및 내역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영문 기재	
	화요일 (TUE) 출근시간(starting time): 퇴근시간(closing time):		
	수요일 (WED) 출근시간(starting time): 퇴근시간(closing time):		
	목요일 (THU) 출근시간(starting time): 퇴근시간(closing time):		
	금요일 (FRI) 출근시간(starting time): 퇴근시간(closing time):		
	현지책임관 확인 (local authority confirm)	직위(Position)	성명(Name)

210mm×297mm[백상지] 80g/m²

기 간 (period)	출퇴근 상황 (commute)		수행업무 내용 (details of performing business)
(작성예시) 1. 1(월)~ 1. 5(금)	정규 출퇴근 시간(ordinary starting/closing time) 출근시간(starting time): 퇴근시간(closing time):		
	월요일 (MON)	출근시간(starting time): 퇴근시간(closing time):	연구과제명 기재 ※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업체 평가 시 감점
	화요일 (TUE)	출근시간(starting time): 퇴근시간(closing time):	
	수요일 (WED)	출근시간(starting time): 퇴근시간(closing time):	
	목요일 (THU)	출근시간(starting time): 퇴근시간(closing time):	
	금요일 (FRI)	출근시간(starting time): 퇴근시간(closing time):	
현지책임관 확인 (local authority confirm)	직위(Position)	성명(Name)	서명(Signature)

일시귀국 내역 (temporary return to home country)	기간(period) : ~	귀국 사유(reason for return)
근무지 변경내역 (details of changed workplace)	기간(period) : ~	변경사유(reason for change)/변경근무지(changed workplace)/ 수행업무내용(performing business)
기 타/etc)		

※ 일시귀국 내역 및 국외여행 목적달성을 위한 부득이한 국외 근무지 변경내역 반드시 기재
 ※ 출장 시에는 “수행업무 내용”에 출장지, 출장내용 기재 및 출장 증빙서류 별첨

년(year) 월(month) 일(day)

작성자(applicant) 성명(name)

서명(signature)

확인자(confirmmer) 업체의 장(the head of a company)
(대표이사)

서명(signature)

210mm×297mm[백상지 80g/m²]

[붙임 제10호 서식]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23호서식]〈신설 2017. 7. 3.〉

파견자 성실 복무관리 서약서

복무관리 담당 (파견지)	성명	직책(직위)	
	업체명	전화	
	업체 주소	파견자 관리기간 . . . ~ . . .	
	복무관리담당 근무장소(건물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		
복무관리 대상 (파견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파견지 근무장소(파견업체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근무하여야 함, 건물 동호수까지 기재)		
	근무인원(파견자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할 인원)		
파견근무자 복무관리 방법*	수행업무	- 파견지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근무 점검 - 파견 목적 분야 업무 수행여부 점검 - 주단위로 『업무수행내역서』 작성토록 지시	
	출·퇴근부	- 전자식 : 매월 출력하여 관리 - 수기식 : 일자별 출·퇴근 시각 기재(매일 확인 서명)	
	개인별 복무상황부	- 정상근무 외 발생되는 모든 근태사항 기록 - 출장, 연(병)가 등 근무상황 발생시 복무관리 담당자의 사전결재를 받아야 함.	

* 업무수행내역서(자유서식), 출퇴근부, 개인별 복무상황부를 격주단위로 병역지정업체에 통보

병역의무자의 파견근무 기간동안 복무관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복무관리 담당자
(파견지)

(서명 또는 인)

위 파견자의 파견기간 동안 신상변동사항 통보의무 준수 등 성실복무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역지정업체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불법 제11호 서식]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 9.29, 2017. 7. 3.>

개인별 복무상황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 ① 구분 : 출장, 외출, 지각, 조퇴, 병가, 연가 등 근무상황 기재
 - ② 기간 또는 일시 : 구분에 기재된 근무상황의 기간 또는 일시 기재(지각·조퇴·외출·결근 등은 시간까지 기재)
 - ③ 내용 : 구분에 기재된 근무상황의 사유·목적, 장소 기재
 - ④ 누계 : 구분에 기재된 근무상황을 병가/연가로 구분하여 기간(시간) 누계 기재
(예시 : 병가 3일 5시간, 연가 7일 2시간 등)
 - 병가 : 질병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결근 등을 기재하며, 편입일부터 만료일까지 누계 작성
 - 연가 : 질병 외 지각·조퇴·외출·결근 등을 기재하며, 업체에서 정한 기준일부터 1년 단위로 작성
(예시 : 7.1.이 기준일인 경우, 7.1.~다음해 6.30.까지 누계 작성)
 - * 병가 및 연가 누계 작성 시, 지각·외출·조퇴·결근 등으로 누계 8시간 일 경우 1일로 계산하며,
개인별 병가 및 연가 초과 시 그 기간만큼 연장 복무
 - * 연장복무대상은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연장복무일수를 통보

210mm x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 풀)

[붙임 제12호 서식]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1. 9.29, 2016.11.30.>

무단결근 확인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전화:)
재직사항	업체명	근무부서
	소재지	
무단결근 내 용	편입일	전화번호
	업체명 20 . . . ~ 20 . . . (일간)	사유

아래 의무자 서명 누락의 경우 그 사유 기재

위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무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병역지정업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붙임 제13호 서식]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개정 2021. 10. 14.>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처리기간 생계곤란: 90일

그 밖의 사유: 3일 이내(세부기준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름)

* 아래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합니다. (앞쪽)

구 분	[]복무기간 단축 []전시근로역 편입	[]보충역 편입 []병역면제	[]대체역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병역처분 변경
-----	---------------------------	----------------------	-----------------------------------

병역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병역사항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복무 중인 사람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사람
	[]대체복무요원소집 대상자	[]대체복무요원 복무 중인 사람 []예비군대체복무소집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군사교육소집, 복무 종)	[]예비군 []기타()

신청내용	병역 감면 등	[] 복무기간 단축 신청	[]생계유지곤란 사유 []국가유공자
		[] 보충역 편입 신청	[]국가유공자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 등 []수형자
		[] 전시근로역 편입 신청	[]생계유지곤란 사유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 등 []수형자 []중학교 중퇴 이하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귀화자 []고아(아동양육시설 등 5년 이상 재원 포함)
	복무 희망	[] 병역면제 신청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 등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한 사람
		[] 대체역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신청	[]생계유지곤란 사유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 등 []귀화자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고아(아동양육시설 등 5년 이상 재원 포함)
		[] 병역처분 변경 신청	[]질병치유 []장애인 []국외이주자 []고아 []귀화자 []학력변동 () []북한이탈주민 - 혼역[], 사회복무[] 희망 : 년 월 일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의 혼역 복무 희망
	[] 신체검사 장소 선택	[] 실거주지 (소재지:) - [] 학생 [] 학원수강생 [] 직장인 [] 기타 [] 주민등록지 [] 병역판정검사 시 관할 지역	

「병역법」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5조 및 제6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210mm × 297mm[백상지 80g/m²]

첨부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생계유지곤란 사유(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p>1. 재산수입사향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2. 가시상황 신고서 1부 3.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병무용진단서 1부(가족 중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그 밖에 병역감면에 필요한 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류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한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p>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임야)대장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4. 일반/집합 건축물 대장 5. 자동차등록원부(갑/을) 6.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7.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8. 건물등기부 등본 9.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0. 토지등기부등본 11. 휴업사실 증명 서류 12. 사업자등록증 13. 평연시설 증명 서류 14. 소득금액증명 1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6. 장애인증명서 17. 산재보험급여지급 증명 서류 18.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9.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20.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국가유공자(부모,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국가유공자 증명 서류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 등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 장애인증명서 2. 국가유공자 증명 서류상이등급이 1급부터 7급까지인 경우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1.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수행자(6개월 이상 형을 받은 사람)	판결문 사본 1부 또는 형사재판확정증명서 1부(판결문 사본으로 형의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	시·군·구·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이 발행한 사실확인서 1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고아	<table border="1"> <tr> <td>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td> <td>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td> <td>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td> </tr> <tr> <td>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td> <td>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td> <td>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td> </tr> <tr> <td>아동양육시설 등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td> <td>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 1부</td> <td> 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td> </tr> </table>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아동양육시설 등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 1부	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아동양육시설 등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 1부	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여성으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1. 판결문 사본 1부 2. 병무용진단서 1부(판결문 사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귀화허가서 사본, 관보 사본,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중학교 졸업하지 않은 사람(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병무용 학력증명서 또는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거나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음									
질병이 있는 사람, 질병이 치유된 사람	병무용진단서 1부	없음									
실거주자 등 광활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희망하는 사람	학교 재학, 학원 재원, 재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음									
학력이 변동된 사람	학력증명서 1부	없음									
북한이탈주민(「병역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병역이 면제된 사람)	없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병역복무 변경 및 면제 종류를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 체크한 후 병역의무자란에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2. 자신의 병역사항 및 병역복무 변경 및 면제 종류(복무기간 단축, 보충역면입,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면제, 대체역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병역 처분변경) 중 해당 사유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 체크하십시오. 3. 신청일, 신청인, 의무자와의 관계를 적은 후 서명해 주십시오. 4.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처분을 받기 위해 귀하 및 귀하 가족에 대한 재산과 수입을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의 전산자료를 통해 반드시 확인합니다. 나. 「병역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해당되어 신체등급 4급인 사람이 현역으로 처분된 후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현역신분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이 적용됩니다. 다.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병역감면이 제한됩니다. 											

[붙임 제14호 서식]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16.11.29.>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수신자 업체의 장

(경우)

제 목 의무복무기간 만료 처분 통보

「병역법 시행령」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전문 연구(산업기능)요원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三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전문연구(산업기능) 요원 면부

297mm×210mm[백상지] 80g/m²]

[**붙임 제16호 서식**]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18. 6.1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

(앞쪽)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학력	학교 과 년 (졸업, 중퇴, 휴학, 야간대 재학)
병역사항	병역판정검사 연도	신체등급
	병역처분	병종(직군)
편입사항	자격·면허명	업체명·지방자치단체
	자격·면허번호	근무부서·담당업무(사업장소·사업종목)
	편입일	복무만료 예정일

১০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질이

* 불모기률은 보진(선픽)변경 해외여수 박사과정수학 교육홍련 파견(출장) 업체 간 전직 들으로 구분하여 정했습니다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뒤쪽)

신상변동 사항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업체 장·지방 자치단체장 확인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일	확인일	확인일	확인일	확인일	확인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실태조사

안내사항

- 신상변동사항의 신상변동 내용란에는 「병역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 업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기록사항을 최종 검토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관할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업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중에 해당 연도 복무 및 신상변동 사항을 확인하여 검토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붙임 제17호 서식]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11.9.29, 2016.11.30., 2021.5.31.>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군번
	주소		
복무사항	업체명	복무분야 <input type="checkbox"/> 전문연구요원 <input type="checkbox"/> 산업기능요원	
	편입일	의무복무 만료예정일	
	군사교육소집		
용도	[] 대학 등 복학신청용 [] 기타()		

위와 같이 의무복무중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지)청장
또는 병역지정업체장

직인

※ 의무복무 만료 예정일은 병역법령의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붙임 제18호 서식]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1. 9.29, 2016.11.30.〉

복무관리 실태조사 통보서

업체명		조사일자
실태조사관	소속	성명
인적사항	연락전화	

「병역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귀 업체에서 의무복무중인 전문연구 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원활한 직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사 협조사항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와 관련된 인사명령서 등 실태조사관이 요구한 일체의 서류 확인 또는 제출
- 해당분야 복무 여부 등의 복무실태점검을 위한 복무 현장 안내와 직무수행 적극 협조
- 복무사항 파악 및 고충상담을 위해 별도의 장소에 집합 요구시 즉시 집합조치
- 실태조사결과 법규위반으로 확인된 경우 위반사항별로 담당부서의 장 및 업체의 장이 서명 날인한 확인서와 관련서류를 실태조사관에게 제출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붙임 제19호 서식]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1. 9.29.>

실태조사 참석 현황

참석현황						
총원	현재원	미참석 인원	미참석 사유			
			야간근무	훈련	연수 (국외출장)	휴가

※ 기타내역:

※ 미참석 사유 관련 즐빙서류 첨부

96 월일

업체(복무기관)의 장

직인

210mm x 297mm [익방용지] 60g/m² [재활용품]

[붙임 제20호 서식]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1. 9.29, 2016. 5. 2.>

실태조사 사항 확인서

제 목	
관련근거	
내 용	
결함사항	
붙임 (결함사항에 대한 증빙서)	

실태조사 결과 상기와 같이 결함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직인

업체(복무기관)의 장

210mm×297mm[백상지 80g/m²]

[붙임 제21호 서식]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자가진단표

I. 업체 기본사항

(20. . .)

업체명		분야		주소지	
전화번호		복무인원		선정년도	

II.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문항	진단항목	자가진단
1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해고, 퇴직사실이 있는 경우 지방병무청에 신상변동통보를 하였나요?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2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이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지정된 공장, 연구소)에 복무하고 있나요? ※ 장소제한 : 편입당시 지정된 공장·연구소 외 근무 불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3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이 편입당시 해당분야(자격증, 전공분야)에 복무하고 있나요? ※ 전공, 자격증, 제조·생산·운송 분야 외 사무직·영업직 등 겸직 금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4	아래 사유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에 신상변동통보를 하였나요?	
	①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휴직, 정직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② 다른 업체로부터 전직자를 밤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③ 통산 병가일수 30일 초과('16.6.13 이전 편입자는 3개월)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④ 지정업체간 파견근무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⑤ 8일 이상 3개월 미만 출장·파견·교육훈련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⑥ 박사과정 전문연구원 수료, 박사학위 취득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⑦ 무단결근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⑧ 박사학위 과정 수학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제외)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⑨ 편입당시 해당분야 미 복무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문항	진단항목	자가진단
5	7일 이내 출장·파견·교육훈련에 대해 복무기록표를 정리하였나요?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6	3개월 이상 출장·파견·교육훈련에 대해 지방병무청 승인을 받았나요?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7	결근 및 지각·조퇴·외출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휴가일수에서 공제 또는 지방병무청에 통보하였나요?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8	연간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허가한 경우 지방병무청에 통보하였나요?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9	요원 명부, 복무기록표, 개인별 복무상황부, 출근부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였나요?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10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 * 자연계대학원(과기원)만 작성 아래 사유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에 신상변동통보를 하였나요?	
	①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② 휴학 등 사유로 35세 또는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③ 수학(수료까지)기간 3년 6개월 초과할 경우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④ 원에 의한 취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III. 병역지정업체 관련 사항

문항	진단항목	자가진단
1	아래 사유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에 신상변동통보를 하였나요?	
	① 휴업, 영업정지, 직장폐쇄, 폐업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② 부도발생으로 조업중단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③ 공장등록 취소(산업체), 연구소 인정 취소(연구기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④ 상시근로자수(산업체)·연구전담요원(연구기관) 미달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⑤ 업체 명칭, 업종 변경, 다른 업체와 합병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⑥ 병역지정업체 소재지 변경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⑦ 공장 내 다른 법인(개인사업장) 입주(공장 미독립)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⑧ 법인의 기업규모 변경(중소↔중견↔대기업), 법인 대표자 변경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 자가진단표는 1, 4, 7, 10월 첫째주에 작성하여 복무관리 서류와 함께 관리하고, “아니요”로 체크된 경우 즉시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22호 서식]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14. 3.26, 개정 2016.11.30.>

군사교육소집 제외 신청서

※ 아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E-mail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세대주	세대주와의 관계
※ 사유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유		

위와 같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 제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병역의무자와의 관계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주소는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E-mail은 등록된 경우에만 기록하십시오.
2. 교육소집 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군사교육소집 제외 심사위원회」심사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제외 여부가 결정 되며, 필요시 병무용 진단서와 의무기록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붙임 제23호 서식] 『별표 7』(신설 2014. 3.26, 개정 2016.11.30.)

귀가자(퇴영 포함) 등 군사교육소집 제외 기준

같은 병명의 인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질병·심신장애의 호수를 기준으로 같은 호수 내의 질병인 경우.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의 경우 모두 같은 병명으로 인정○ 같은 신체부위 또는 같은 원인으로 인한 질환인 경우 〈예시〉<ul style="list-style-type: none">- 갑상선염 현증(757호-10), 갑상선 기능 항진증(757호-11), 갑상선 기능 저하증(757호-12), 갑상선 종양(757호-13) 등 갑상선 관련 질환- 본태성 고혈압(757호-48), 본태성 고혈압의 2차적 병변(757호-49), 원인성 고혈압((757호-50) 등 고혈압 관련 질환
치유기간 인정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영신체검사 후 귀가·퇴영 시 정밀신검판정서에 명시된 치유기간○ 귀가·퇴영에 따른 재신체검사 시 명시된 치유기간(7급 치유기간) * 복무 중에 신체등급 4급으로 변경된 자의 경우 신체등급이 4급으로 변경되기 이전의 귀가(퇴영 포함)는 포함되지 않음
귀가·퇴영 인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등급 4급으로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어 (복무 중에 신체 등급 4급으로 변경된 자 포함) 군사교육소집 입영 후 귀가 또는 퇴영된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 후 귀가되어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경우○ 신체등급 4급자로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군사교육소집 입영 후 귀가 또는 퇴영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밖에 군사교육소집 시 사고발생 우려 등 군사교육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붙임 제24호 서식]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19호서식]<개정 2018. 3.16.>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사용권한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시기 바라며, *부분은 필수기재 사항입니다.

신청구분*			사용구분*		
	[]사용	[]사용자변경	[]사용취소	[]정	[]부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			휴대폰*	
	E-mail			담당부서명	
병역지정 업체 (자치단체)	업체명* (자치단체)			대표자성명	
	병역지정업체 주소* (자치단체)				
	법인등록번호*				
	신청사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산업지원 병역일터 사용권한 부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산업지원 병역일터 사용권한 부여	사용담당자 변경 후 180일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산업지원 병역일터 사용권한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사용권한 신청에 있어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자료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제공함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위와 같이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사용권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병역지정업체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직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²]

[붙임 제25호 서식]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28호서식] <신설 2019. 5.31., 개정 2021.7.26.>

4촌 이내 혈족 확인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업체명	대표이사 취임일			
	대표이사 성명	생년월일			
확인사항	대표이사 취임일 이후 4촌 이내 혈족 중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인원	[] 있음 [] 없음		* 있음으로 체크한 경우 아래 명단 작성	
		성명	생년월일		편입일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제29조제2항 및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재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과 4촌 이내 혈족관계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안내사항	대표이사(병역지정업체가 기업부설연구기관인 경우 모기업을 말함)와 4촌 이내 혈족인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편입, 전직)할 경우 「병역법」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의무자는 편입취소 되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고발 조치됩니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에 4촌 이내 혈족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업체 평가 시 감점 조치됩니다.

년 월 일

대표이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붙임 제26호 서식]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29호서식] <신설 2019. 5.31.>

전직 의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인 (병역지정업체의 장)	성명(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E-mail
전직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복무분야 []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	근무부서/담당업무
	전직신청일	전직사유
전직에 대한 의견		

위와 같이 전직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업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작성요령 등	1. 의견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2. 의견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전직[대기]자 관리 명부

작성방법 등 유의사항

- ① 전자서유가 발생한 날(당연전지) 또는 승인을 받은 날(승인전지)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였을 때는 매월 1회 이상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일자를 기록합니다.

② 전직대기기간(3개월) 이내 미전주자는 구직활동 내역서를 제출받아 대기간 연장(3개월) 여부를 결정하고, 구직활동을 불성실하게 한 경우는 대기간이 연장되지 않음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붙임 제28호 서식]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개정 2018. 6. 11.>

업체명

수신자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경유)

제 목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병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산업기능) 요원의 신상변동 사항과 업체 변경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신상변동 사항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편입일	신상변동사항	발생일	서명

2. 업체 변경사항

업종분야	업체명	변경사항	사유 발생일	변경 전	변경 후

끝.

업체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붙임 제29호 서식**]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서식] <개정 2021. 6. 23.>

병역이행일 등 신청(희망시기변경 · 취소 신청)서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경우 √ 표를 합니다.

(앞쪽)

처리기간 우선 병역판정검사, 입영편정검사, 재학생 입영·소집(취소), 입영·소집시기 변경: 1일
국외체재자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입영·소집: 2일

구 분	[]우선 병역판정검사 []국외체재자 병역판정검사 · 재병역판정검사 · 입영 · 소집	[]입영판정검사 []재학생 입영 · 소집(취소)	[]재학생 입영 · 소집시기 변경	
병역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통지서 수령인	본인과의 관계		
병역사항	[]병역판정검사 ·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대체복무요원소집 대상자 []기타 ()			
우선 병역판정 검사 신청	[]국외출국(예정) 병역판정검사 희망일:	[]산업기능요원 편입	[]기타()	
	년 월 일			
[] 입영판정검사 신청	입영판정검사 희망일:	년 월 일		
[] 국외체재자 병역판정검사 · 재병역판정검사 · 입영 · 소집 신청	[](재)병역판정검사 신청	(재)병역판정검사 희망일:	년 월 일	
	[]입영 · 소집 신청	년	[] 분기 [] 월 [] 언제라도 좋다	
[] 재학생 입영 · 소집 신청(취소), 입영 · 소집 시기 변경 신청	학적사항 ※ 입영 · 소집 신청자 공통	학교	학과	학년(재학 · 휴학 · 퇴학 · 졸업)
	[]입영 · 소집 신청	년	[] 분기 [] 월 [] 언제라도 좋다	
	[]입영 · 소집 신청 취소	[대학(교) 년 재학, 복학]	학업계속	
	[]입영 · 소집시기 변경 신청	년 분기 월(을) 년 분기 월(으로)		

「병역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제18조의3제4항, 제126조제1항, 제128조의2제1항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의2, 제85조 제8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二〇一〇年

(서면 뜯느 이)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인
의무자와의 관계

210mm × 297mm [배산지] 80g/m²

첨부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우선 병역판정검사	국외취업자	국외여행 허가사항 확인으로 대신합니다.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해운업체 등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및 고용예정 증명서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지원한 사람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기타	관계 증명서류
입영판정검사를 원하는 사람		없음

작성방법 및 유의 사항

1. 구분란의 해당사항에 표시를 한 후 병역의무자란과 병역사항을 적습니다.
2. 신청을 원하는 해당사항에 표시를 한 후 그 내용을 적습니다.
3. 입영·소집 신청자 유의사항
 - 가. 입영·소집일부터 60일 이내에 입영·소집 신청을 취소한 사람은 취소 후 2개월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나. 입영·소집시기 변경은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이미 입영·소집이 통지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입영·소집일부터 60일 이내에 입영·소집시기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입영·소집 신청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33호서식] <신설 2021.11.30.>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학위취득 유예기간 부여 신청서

* 부분은 필수기재 사항입니다.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연락전화)*	E-mail
	주소	

병역지정 업체 (대학원)	대학원명*	학과*
	편입일자*	복무만료 예정일자*
	신청 유예기간(최대 3년이내)*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학위취득의 유예기간 신청에 있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기간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대학원명, 학과, 편입일자, 복무만료 예정일자, 신청유예기간	학위취득 유예기간 신청 부여 판단 자료 이용	유예기간 부여일 이후 180일 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박사과정 학위취득 유예기간 부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학위취득의 유예기간 신청에 있어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자료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제공함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학위취득 유예기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병역지정업체명

직인

병무청장 귀하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표 제34호서식] <신설 2021.11.30.>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유예기간 부여 신청자 명단

작성 유의사항

- ① 신청일자, 생년월일 및 편입일자는 8자리로 기록 (예시 : 20230301)
 - ② 신청 유예기간은 년 단위로 기록 (예시 : 3년)

유연근무 신청(변경)서

병역지정업체명	부서 (업무)	
생년월일		
성명		
유연근무 신청기간	근무요일별 근로시간 선택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	월요일	○○시 ~ ○○시
	화요일	○○시 ~ ○○시
	수요일	○○시 ~ ○○시
	목요일	○○시 ~ ○○시
	금요일	○○시 ~ ○○시
	계	○○시 ~ ○○시
공동근무시간	○○시 ~ ○○시(○시간)	
위와 같이 유연근무제를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인) 또는 서명		
위 신청(변경)을 허가함 년 월 일		
병역지정업체장		(인) 또는 서명

전문연구요원 상담 전화번호

청 별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서 울 지방병무청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07360	02)820-4492, 4494, 4496	02)820-4151
부산·울산 지방병무청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	48208	051)667-5238, 5257~9	051)667-5123
대구·경북 지방병무청	대구 동구 동내로 63	41069	053)607-6256 6281~5	053)607-6250
경 인 지방병무청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16440	031)240-7258, 7379, 7281~4	031)240-7523
광주·전남 지방병무청	광주 동구 양립로 119번길 8	61489	062)230-4253~4, 4355	062)230-4293
대전·충남 지방병무청	대전 중구 중앙로 16번길 5	34944	042)250-4256	042)250-4127
강 원 지방병무청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	24342	033)240-6255, 6266	033)240-6260
충 북 지방병무청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33	28653	043)270-1351~2	043)270-1370
전 북 지방병무청	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4	55033	063)281-3143, 3253	063)281-3300
경 남 지방병무청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13	51439	055)279-9254~6	055)279-9387
제 주 지방병무청	제주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3층	63219	064)720-3255, 3217	064)720-3260
인 천 병무지청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	22205	032)454-2284	032)454-2417
경기북부 병무지청	경기도 의정부시 전좌로 76	11642	031)870-0253, 0810	031)870-0358
강원영동 병무지청	강원 강릉시 울곡로 2705	25590	033)649-4216	033)649-4280
병무청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902호	35208	042)481-2813, 2818	042)481-2819